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1-15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signating domestic
representative

김민희/김현수/이보겸/박영덕

2021.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 보고서는 202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 김민희

참여연구원 : 김현수

이보겸

박영덕(해리국제통상센터)

목 차

요약문	vi
제1장 서 론	1
제2장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환경 변화	2
제1절 온라인 서비스 이용 증가	2
제2절 해외 온라인 서비스 이용 증가	3
제3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실태	7
제1절 온라인 이용자 피해 증가	7
제2절 해외 온라인 사업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	10
1. 구글	10
2. 페이스북	11
3. 텔레그램	12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유사 제도 사례	14
제1절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14
1. 개요	14
2. 대리인 관련 조항	14
제2절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	18
1. 개요	18
2. 대리인 관련 조항	19
제3절 EU 디지털서비스법	19
1. 개요	19

2. 대리인 관련 조항	20
제4절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1
1. 개요	21
2. 대리인 관련 조항	22
제5장 국내대리인 제도 현황 및 이슈 분석	28
제1절 국내대리인 제도 현황	28
제2절 국내대리인제도 관련 이슈	34
제3절 국내대리인제도 통상법적 이슈 검토	36
1.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36
2. 내국민대우 의무 합치성 검토	37
3. 현지주재의무 합치성 검토	40
4. 한-미 FTA 제23.1조 2항과 GATS 제XIV조에 따른 예외적 정당화 검토	42
5. 소결	51
제6장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방안 도출	53
제1절 국내대리인 운영 현황 실태조사	53
제2절 국내대리인 역할 강화	54
제3절 대리인 지정 의무사업자 지정 관련	55
제4절 제도 홍보 및 교육	56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57
참고문헌	59
부 록	62

표 목 차

<표 2-1> 동영상 이용 앱/사이트(1+2+3순위, %, %p)	5
<표 3-1>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현황	7
<표 3-2> 사이버 범죄 발생 현황(단위: 건, 명)	8
<표 3-3> 세부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 (발생건수 기준)	9
<표 4-1> 제27조 유럽연합 내에 설립되지 않은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대리인 ·	17
<표 4-2>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10조 신규대조 조문	22
<표 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규칙 등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 개요	23
<표 4-4>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에 관한 지침(1)	25
<표 4-5>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에 관한 지침(2)	25
<표 4-6>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에 관한 지침(3)	26
<표 4-7>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에 관한 지침(4)	27
<표 5-1> 관련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제도 현황	30
<표 5-2>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	34

그 립 목 차

[그림 2-1] 개인 인터넷 이용률 추이(%)	2
[그림 2-2] 인터넷쇼핑 이용률 추이(%)	3
[그림 2-3] SNS 서비스 이용률 변화(%)	4
[그림 2-4] 국내 PC기반 주요 검색 플랫폼의 검색 쿼리 점유율 추이(%)	6
[그림 3-1]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형태	10
[그림 3-2]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구조	11
[그림 3-3]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모집	13
[그림 4-1] 일본 외국 법인 등의 국내 대표자 지정	21

요 약 문

1. 제 목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국내 이용자의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온라인 사업자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이용자에 대한 해외사업자의 영향이 확대되었으나 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 규제 집행력이 약하여 이용자 피해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여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자료 제출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대리인제도 운영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외사업자가 페이퍼 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밝혀졌으며, 국내대리인의 역할이 동법 위반 또는 혐의에 의한 자료 제출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대리인 제도 관련 이슈 사항을 발굴하고 해외 유사제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제2장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국내대리인의 자료 제출 업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해외 유사 제도 사례를 검토한다. 해외에 사례는 EU GDPR,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 EU DSA 및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대리인 관련 법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국내대리인 제도 현황과 개선이 요구되는 이슈 사항에 대해 발굴하고,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시 WTO/FTA 합치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통상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대리인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제7장은 결론에 해당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해외에서 자국 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사업자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유사 제도 사례인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EU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이하 DSA) 및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 등에서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해외사업자에 규제를 강화한 것이 의미 있는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페이스북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가 독일 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그간 사법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었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 역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사례 연구를 통해 대리인의 책임성 및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참고하여 정보통신망법 상 국내대리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제도의 문제점을 식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내대리인제도는 해외사업자가 페이퍼 컴퍼니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

내대리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EU GDPR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정된 국내대리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개보위로 이관됨에 따라 국내대리인의 역할이 동법 위반 등에 의한 자료 제출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대리인제도의 국내 온라인 이용자 보호라는 도입 취지에 더욱 부합하기 위해 불법 및 사생활 침해 게시물 등에 대해 대리인에게 민원 접수 업무 등 역할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상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동법 위반 또는 혐의가 있는 사업자로 되어있다. 그러나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 대리인 지정 사업자 선정 기준에 자국 내 이용자 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자국 온라인 이용자가 많은 해외 사업자 위주로 대리인을 지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는 점 등을 참고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 기준에 이용자 수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내대리인에 추가적인 역할 부여 시 위법한 콘텐츠 등에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결과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기대효과

본 연구결과는 해외사업자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건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UMMARY

1.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signating domestic representative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Recently, the use of global online service providers such as Google and Facebook by domestic users is increasing. As a result, the influence of foreign operators on domestic users increased, but it was found that it was difficult to respond in a timely manner to user damage due to the weak enforcement power of domestic regulations on foreign operators that did not have a separate local corporation. Accordingly, the domestic agent system is being operated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gulatory enforcement power of overseas business operators to protect domestic users and to establish a sound and saf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se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the domestic agent system is designed to designate a domestic agent for overseas business operators who provid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without having an address or business office in Korea to represent the submission of data when a viola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s discovered or suspected.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Chapter 2 examines the changes in the online service use environment, and Chapter 3 examines the alleged viola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which is the task of submitting data by domestic agents. And in Chapter 4, cases of similar overseas systems are reviewed. Overseas cases review the agency-related laws in the EU GDPR, Germany's Network Enforcement Act, EU DSA and Japan's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amendments. And in Chapter 5, the status of the domestic agent system and issues that require improvement were discovered, and trade law issues were discussed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WTO/FTA compatibility was not sufficiently reviewed when the domestic agent system was introduced. Chapter 6 discusses ways to improve the domestic agent system based on the research content, and Chapter 7 is the conclusion.

4. Research Results

In order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domestic agent system, first, the EU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which is a similar system that requires the designation of an agent for a business that does not have a legal entity in the country abroad, and the German Network Enforcement Act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EU Digital Service Act (DSA) and Japan's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amendments were reviewed. And based on this, problems of the domestic agent system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First, it was revealed through a fact-finding survey that the domestic agent system was poorly operated, such as overseas business designating offshore companies

as domestic agents. Therefore, in this study, a plan to periodically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was suggested to check whether the domestic agent is operating properly. In addition, referring to cases such as EU GDPR, it was proposed to designate an individual person in charge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designated domestic agent. The EU GDPR and Germany's Network Enforcement Act intend to strengthen the accountability of agents by designating and reporting individual contacts.

In addition, as the personal information-related contents were transferred to the Revision Commission, it was found that the role of a domestic agent was limited to submitting data due to violations of the same law.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better match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domestic online user protection system of the domestic agent system, a plan was proposed to give the agent additional roles, such as complaint reception, for illegal and privacy-infringing postings. Finally, the criteria for designation of domestic representatives of overseas business operators were reviewed. Currently,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businesses that are required to designate a domestic agent are those with a sales standard above a certain level, or are suspected of violating the same law. However, referring to the fact that the number of domestic users was included in the criteria for selecting agents designated by the German Network Enforcement Ac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by designating agents mainly for overseas operators with many online users in their country, etc., It was proposed to include the number of users in the criteria.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improve the domestic agent system to strengthen the regulatory enforcement power of overseas business operators.

6. Expect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afe and sou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by protecting domestic users from overseas operators.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The changes in using the online services

Chapter 3. Cas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violations

Chapter 4. Cases in similar schemes in overseas
countires

Chapter 5. Analysis of the issues of designating
domestic representatives

Chapter 6. The improvement of designating domestic
representatives

Chapter 7.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제1 장 서 론

최근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 증가 등으로 국내 이용자의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온라인 사업자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이용자에 대한 해외 사업자의 영향이 확대되었으나 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 법규제 집행력이 약하여 국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여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자료 제출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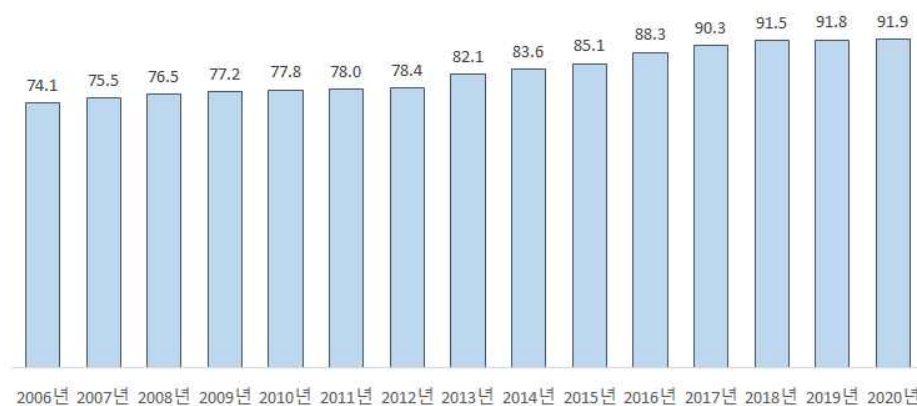
그러나 국내대리인제도 운영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외사업자가 페이퍼 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밝혀졌으며, 국내대리인의 역할이 동법 위반 또는 혐의에 의한 자료 제출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대리인 제도 관련 이슈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국내대리인의 자료 제출 업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해외 유사 제도 사례를 검토한다. 해외에 사례는 EU GDPR,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 EU DSA 및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대리인 관련 법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국내대리인 제도 현황과 개선이 요구되는 이슈 사항에 대해 발굴하고,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시 WTO/FTA 합치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통상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대리인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제7장은 결론에 해당된다.

제2장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환경 변화

제1절 온라인 서비스 이용 증가

지난 약 15년 간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3)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전체 인구(만 3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91.9%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다. 2006년 74.1%였던 인터넷 이용률은 2020년 91.9%로 17.8%p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 개인 인터넷 이용률 추이(%)



주: 만 3세 이상 인구 기준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3),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또한, 인터넷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스턴트 메시지 이용, 인터넷 쇼핑 이용, 인터넷 बैं킹 이용 역시 증가하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인스턴트 메시지 이용률은 97.1%에 달하였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전자상거래(쇼핑) 이용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만 20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최근 1년 이내 인터넷쇼핑(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예약·예매 포함))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69.9%를 기록하였고, 이는 2019년에 비해 5.8%p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 증가가 가속화됨에 따라 예년보다 큰 폭으로 인터넷쇼핑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그림 2-2] 인터넷쇼핑 이용률 추이(%)



주: 만 12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기준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3),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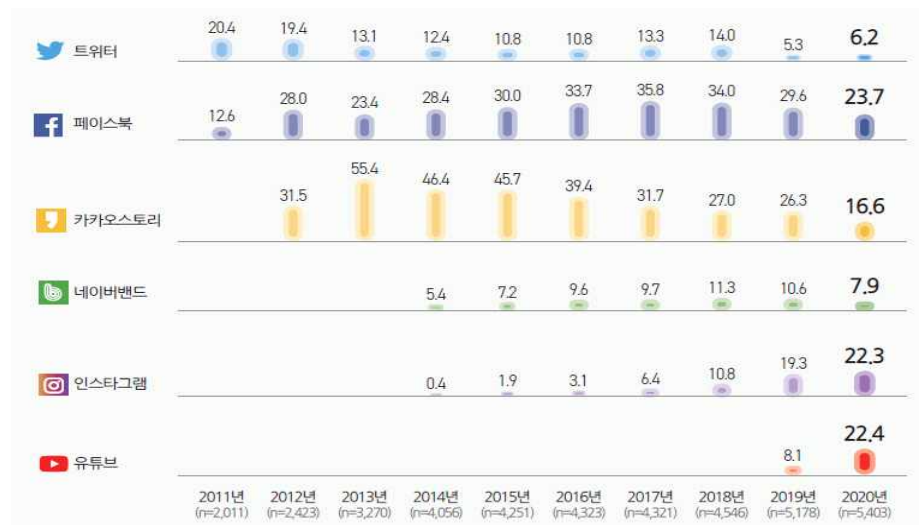
제2절 해외 온라인 서비스 이용 증가

이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 증가와 더불어 해외사업자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이용자 수 통계를 보면,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웹 및 앱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전체 이용자 수 중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수 비중은 25.0%를 차지하였다. 사업자 별로 보면, 구글코리아가 1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페이스북 코리아가 3.9%,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1.1%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미디어패널 조사에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률 중 해외 서비스의 이용률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 SNS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총 6개 SNS 중 4개를 해외사업자가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자 SNS 이용 비중이 2014년 40.8%에서 2020년 74.6%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SNS는 페이스북(23.7%)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 35.8%에서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22.4%)는 2019년 8.1%에서 2020년 22.4%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인스타그램 역시 2014년 0.4%에서 2020년 22.3%로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국내 SNS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는 2012년 31.5%에서 2013년 55.4%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16.6%로 감소하였고, 네이버밴드 역시 2018년 11.3%로 2014년 이후 증가하였으나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3] SNS 서비스 이용률 변화(%)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1.1), 2020년 한국미디어패널 조사결과 주요 내용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이용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영상 서비스 이용 중 유튜브가 8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네이버(30.2%), 넷플릭스(17.0%) 순이었다. 특히, 2019년 대비 유튜브는 11.0%p 증가, 넷플릭스는 9.6%p 증가로 해외사업자 플랫폼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동영상

플랫폼이 런칭되면서 페이스북 와치는 6.4%를 기록하였다. 한편, 2019년 동영상 서비스 이용 앱/사이트 순위에서 2, 3순위였던 아프리카TV, 네이버는 각각 7.4%p, 5.9%p로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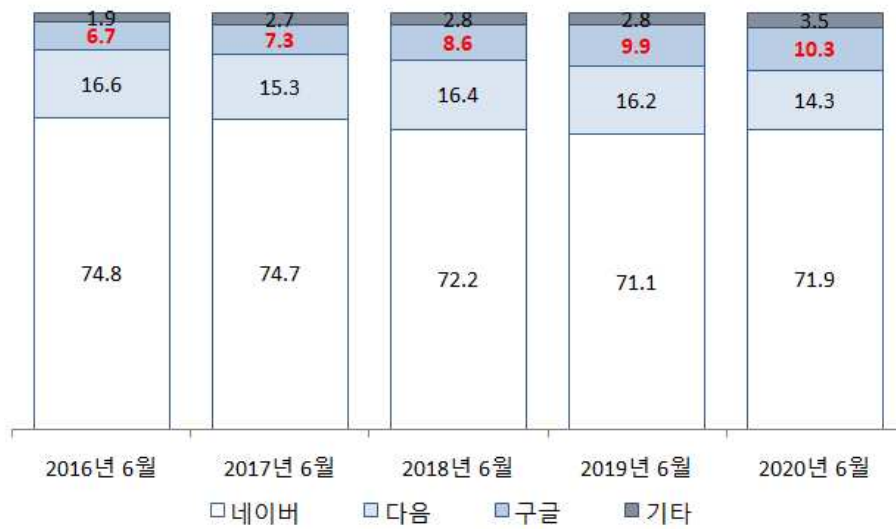
<표 2-1> 동영상 이용 앱/사이트(1+2+3순위, %, %p)

항목	2019년	2020년	GAP
유튜브	76.9	87.9	+11.0
넷플릭스	7.4	17.0	+9.6
티빙	3.7	3.9	+0.2
기타	0.1	0.3	+0.2
페이스북 와치	-	6.4	-
웨이브	-	3.2	-
아마존 프라임	0.3	0.2	-0.1
다음	11.8	11.7	-0.1
왓차플레이	4.2	3.9	-0.3
통신사 앱/사이트	9.1	6.8	-2.3
네이버	36.1	30.2	-5.9
아프리카TV	17.8	10.4	-7.4
전혀 안봄/이용 안함	18.8	7.3	-11.5
푹(Pooq)	4.2	-	-

자료: 과기정통부,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발표

국내 검색 플랫폼에서도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6월 네이버의 검색 쿼리 점유율은 71.9%로 국내 PC 기반 주요 검색 엔진 중 가장 높은 검색 쿼리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나,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해외 사업자인 구글의 경우 2015년 12월 점유율 6.5%에서 2020년 6월 10.3%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4] 국내 PC기반 주요 검색 플랫폼의 검색 쿼리 점유율 추이(%)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3), 2020 한국 인터넷 백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3), 2019 한국 인터넷 백서

제 3 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실태

제 1 절 온라인 이용자 피해 증가

온라인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및 사이버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분야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피해구제 접수건은 145건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 378건, 2020년에는 2018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32건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최근 온라인 이용자의 피해 현황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실태 등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표 3-1〉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145건	378건	532건

자료: 한국소비자원(2020.3), 2020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를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는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서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시스템 및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하는 등의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의미하며,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¹⁾ 그다음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란 정보통신망을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죄를 의미하고, 사이버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위치 정보침해, 사이버 저작권 침해가 포함된다. 불법콘텐츠 범죄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및 전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1) 자료: <https://ecrm.cyber.go.kr/minwon/crs/quick/cyber1>

및 사이버 스토킹이 포함된다.

이들 사이버범죄 중 해킹(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서비스거부 공격(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 악성프로그램(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사이버 음란물(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법 제44조) 및 사이버 스토킹(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되어 본 장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 위주로 발생 추이 등을 살펴본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이버범죄는 2020년 234,098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6년 153,075건에서 52.9% 증가한 수치이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사이버범죄 중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85.3%(발생건수 기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온라인 이용 증가와 더불어 유형별 사이버범죄 건수는 전부 증가하였는데 정보통신망 침해범죄가 2016년 2,770건에서 2020년 4,344건으로 60.9% 증가하였고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2016년 121,867건에서 2020년 199,594건으로 63.8%로 증가한 반면, 불법콘텐츠 범죄는 2016년 28,438건에서 2020년 30,160건으로 6.1% 증가하여 증가폭이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2〉 사이버 범죄 발생 현황(단위: 건,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발생건수		2,770	3,156	2,888	3,638	4,344
	검거	건수	1,047	1,398	902	1,007	911
		인원	1,261	1,141	1,048	1,340	1,037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발생건수		121,867	107,271	123,677	151,916	199,594
	검거	건수	103,172	88,779	93,926	112,398	134,969
		인원	42,871	36,103	35,738	39,508	43,541
불법콘텐츠 범죄	발생건수		28,438	21,307	23,039	24,945	30,160
	검거	건수	23,539	17,312	17,305	19,154	22,302
		인원	31,268	22,125	23,352	26,172	29,678
합계	발생건수		153,075	131,734	149,604	180,499	234,098
	검거	건수	127,758	107,489	112,133	132,559	157,909
		인원	75,400	59,369	60,138	67,020	74,256

자료: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204.jsp>

세부 유형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에서는 해킹이 73.1%(‘20년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범죄인 서비스거부 공격 및 악성프로그램은 각각 0.57%, 0.39%를 기록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서는 사이버 사기가 87.3%(2020년 기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불법 콘텐츠 범죄 중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이 64.3%(2020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발생 건수도 2016년 14,908건에서 2020년 19,388건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 콘텐츠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52.4%에서 2020년 64.3%로 11.9%p 증가하였다.

<표 3-3> 세부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 (발생건수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해킹	1,847	2,430	2,178	2,664	3,176
	서비스거부공격	192	43	20	35	25
	악성프로그램	137	167	119	270	169
	기타	594	516	571	669	974
	합계	2,770	3,156	2,888	3,638	4,344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사이버사기	100,369	92,636	112,000	136,074	174,328
	사이버 금융범죄	6,721	6,066	5,621	10,542	20,248
	개인정보 위치침해	2,410	413	246	179	241
	사이버 저작권침해	9,796	6,667	3,856	2,562	2,183
	기타	2,571	1,489	1,954	2,559	2,594
	합계	121,867	107,271	123,677	151,916	199,594
불법콘텐츠 범죄	사이버음란물	3,777	2,646	3,833	2,690	4,831
	사이버도박	9,538	5,130	3,012	5,346	5,692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14,908	13,348	15,926	16,622	19,388
	사이버스토킹	56	59	60	25	45
	기타	159	124	208	251	204
	합계	28,438	21,307	23,039	24,945	30,160

자료: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204.jsp>

제2절 해외 온라인 사업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

1. 구글

구글은 2014년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2020.2.4. 일부개정 전)을 위반한 바 있다.

구글은 인터넷지도에 해당 지역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시하는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를 위해 2009년 10월 5일부터 2010년 5월 10일까지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를 통해 서울, 부산, 경기(일부), 인천(일부) 지역을 촬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운행 중에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가 오는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함께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맥 주소(MAC address) 또한 약 60만건 이 수집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3-1]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형태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4.1.28), 방통위, 구글 본사에 과징금 부과 보도자료

- 2) 2020년 2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체계를 재정비함에 따라, 동 조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었으며,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였음

이에 따라, 방통위에서는 1년 간 추가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2014년 1월 구글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6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구글에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글에 2억 1천230 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다.

2.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2018년 3월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서 제기되었다. 조사 결과,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되었으며,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3-2]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구조



자료: 개인정보위(2020.11.26)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2020.2.4. 일부개정 전)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³⁾는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3. 텔레그램

텔레그램은 2013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해외에 법인은 둔 사업자로, 메시지 암호화와 대화 삭제 등 보안 기능을 앞세운 메시지 서비스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텔레그램을 플랫폼으로 하여 201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이 발생하였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사건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서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텔레그램을 통해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한 n번방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례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2월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였다. n번방 방지법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치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일반 이용자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진흥원, 성폭력 상담소,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미이행 할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사전 확인 과정에서 텔레그램의 사적 대화방은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 대상

3) 2020년 2월 개정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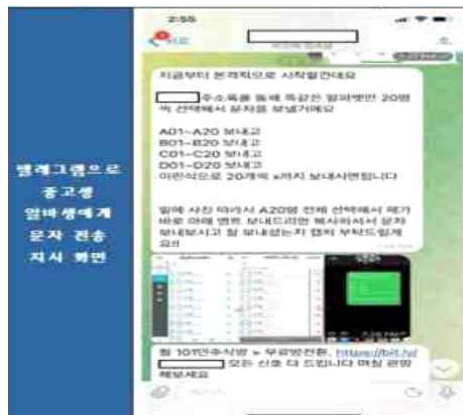
에서 제외되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스팸문자를 전송하게 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텔레그램 문자알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였고, 다량의 휴대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였다. 이러한 아르바이트 모집을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이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제76조(과태료)에 따라,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제74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텔레그램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불법 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은 정보통신방법을 위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 3-3]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모집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2021.8.12),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보도자료

제 4 장 해외 주요국의 유사 제도 사례

제 1 절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1. 개요

EU는 2018년 5월 25일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여 유럽연합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이 동 지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저장, 이전 등을 할 때 GDPR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지니도록 하였다 (이규엽 외, 2020). GDPR의 영토적 적용 범위는 1995년 지침인 95/46/EC (이하 EC지침)과는 달리, EU 역외에 설립되어 EU 역내에서 처리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컨트롤러(이하 정보처리자) 또는 프로세서(이하 수탁처리자)가 EU 내 정보주체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에서 발생하는 정보 주체의 행동을 감시하는 경우의 개인정보처리에도 해당된다. 여기서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수단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결정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에이전시 등을 의미하고, 수탁처리자는 정보처리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에이전시 등을 의미한다 (박노형 외, 2019). 역내 대리인은 GDPR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GDPR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EU 역외 정보처리자 및 수탁처리자에 대해서도 GDPR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2. 대리인 관련 조항

GDPR 제3조 제2항에 따라 GDPR의 적용을 받는 정보처리자 및 수탁처리자는 EU역내에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⁴⁾ 역내대리인은 GDPR에서 신설된 조항이 아니며 '95년 EC지침에서도 존재하였는데, EC지침에서는 EU 역내에 설립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4) 본 장에서는 18년 11월 16일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는 'GDPR의 영토적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3/2018' 에서 채택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처리 목적으로 회원국의 영토에서 자동화 또는 기타 방식으로 설비를 사용했던 정보처리자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되어 있었다 (박노형 외, 2019). 이에 GDPR에서는 유럽연합 내에 설립되지 않은 정보처리자 및 수탁처리자가 유럽연합 내 거주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제27조(2)에 있는 예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유럽연합 역내에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여기서 언급한 개인정보의 처리에는 정보주체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EU 내에 있는 정보주체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대리인 지정 방법에 관해서는 명백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역내대리인이 EU 역외 정보처리자 및 수탁처리자를 대리하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수령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위임장을 수령해야 하더라도 위임장의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 (박노형 외, 2019).

대리인은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GDPR에 관한 의무 또는 행동에 대해 대리하여야 하며, 이러한 대리인의 지정은 정보처리자나 수탁처리자의 GDPR에 따른 책임이나 법적 책임(liability or responsibility)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리인은 서비스 계약에 근거로 이루어지며 자연인이 아닌 기업에서 정보처리자 및 수탁처리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때는 각각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한 명의 개인을 주된 연락처로 지정하고 서비스 계약에 기재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정보처리자, 수탁처리자 및 대리인이 감독당국에게 대리인 지정을 통보할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으나 GDPR 제13조 제1(a)항과 제14조 제1(a)항에 따라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EU 내 대리인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는 EU 내 대리인의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 DPO)의 임무와 양립 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다 (박노형 외, 2019).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처리자와 수탁처리자의 GDPR 준수에 대해서 자율성을 충분히 가지고 조언 또는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며 반드시 EU 역내에 위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리인은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의 위임에 따라서 대리하는 업무를 행하고 EU 역내에 위치하면서 정보 주체와 감독기구와 함께 GDPR 관련 현지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U GDPR에서는 대리인 지정 자격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대신 정부부처 또는 관련 기관인 경우이거나 해당 정보의 처리가 간헐적 및 소규모의 개인정보 처리이며,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이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즉, 개인정보 처리의 성격, 문맥, 범위와 목적을 고려하여 처리가 간헐적이고, 대규모로 제9조 제1항에 언급된 특수한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 또는 제10조에 언급된 범죄경력 및 범죄행위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포함하지 않고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규모 처리에 관해서는 정의되어있지 않지만, DPO에 관하여 대규모 처리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인 구체적인 수 또는 관련 인구의 비율로서 해당 정보주체의 수, 처리되는 데이터의 양 및 다른 데이터 항목의 범위,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간의 상시성, 처리활동의 지리적 범위 등이 있을 수 있다 (박노형 외, 2019).

대리인은 정보주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상품 또는 서비스가 그에게의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그의 행동이 감시되는 회원국 중 하나에 설립되어야 한다. 특히, EDPB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정보주체의 상당수가 하나의 특정 회원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국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리인은 EU에 설립된 법무법인, 자문회사, 민간기업 등 다양한 범위의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실체가 될 수 있으며, EU에서 지정된 대리인의 실체는 EU GDPR 제3조 제1항에서 규정된 정보처리자와 수탁처리자의 사업장이 아니다. 한 명의 대리인이 여러명의 정보처리자 및 수탁처리자를 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소재하는 기업의 웹사이트가 독일어, 영어 및 프랑스어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유로화나 파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제품 등을 EU 역내 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기업은 GDPR 제3조 제2(a)항에 따라 GDPR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는 EU 내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한 국가에 역내대리인을 지정해야만 한다.

대리인은 자신이 대리하는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의 GDPR 의무에 관하여 이들 각각을 위하여 행동하면서 다음의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 먼저 정보제공에 관한 GDPR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대리인의 신원과 연락처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대리인은 자신이 대리하는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와 정보주체 사이의 연락을 원활히 해야 하고, 대리인은 정보처리자와 수탁처리자의 책임 아래 처리 활동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대리인 본인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준수할 책임은 없지만 대리인은 정보주체와 대리하는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도록 지원하여 정보주체가 효과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대리인은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에게서 받은 지시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직무에는 GDPR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하여 소관 감독당국과의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EU는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하나 아직까지 그 사례가 많지는 않다. 네덜란드 감독 기관(Dutch Supervisory Authority for Data Protection)은 EU 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locatefamily.com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 GDPR 제27조 위반으로 525,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⁵⁾ locatefamily.com은 잃어버린 가족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인데,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삭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EU 역내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벌금이 부과되었다.

〈표 4-1〉 제27조 유럽연합 내에 설립되지 않은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대리인

제27조 유럽연합 내에 설립되지 않은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대리인

1. 제3조의 (2)항이 적용되는 경우, 컨트롤러 혹은 프로세서는 유럽연합 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한다.
2. 이 의무는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a) 처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대규모의 처리가 아니며, 제9조 (1)항에 규정된 특정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제10조에 규정된 범죄경력 및 범죄 행위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포함하지 않거나 처리의 성격, 상황, 범위, 목적을 고려했을 때,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처리의 경우; 또는
 - (b) 공공기관 또는 기구;
3. 대리인은 정보주체가 거주하고,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정보주체의 행동이 모니터링 되는 여러 회원국 중 한 곳에 설립되어야 한다.
4. 대리인은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 의해 위임되며,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와 함께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감독기관과 정보주체에 따라, 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착수해야 한다.
5.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대리인 지정은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 자신에게 반하여 제기될 수 있는 법적 행동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5) GDPR Enforcement Tracker - list of GDPR fines

제 2 절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

1. 개요

독일은 소셜네트워크에서 위법한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고 위반하는 경우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NetzDG 이하 네트워크 집행법)’을 2017년 6월 30일 제정하여 10월 1일부터 발효하였다. SNS 사업자를 대표하는 Facebook의 이름을 따서 페이스북법(Facebook-Gesetz)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진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본 법안의 주요한 골자이다 (황태희, 2018). 동 법의 규제대상은 온라인에서 사용자들이 임의의 게시물을 공개 또는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이용자 수가 200만 명 이상인 사업자이다. 규제 대상기업으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레딧, 텀블러, 인스타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네트워크 집행법에서는 페이스북 등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에 게재된 위법한 게시물에 대해서 이용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위법 여부가 확실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 사업자가 불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후 7일 이내에 승인받은 자율규제기구에 결정을 의뢰할 수 있고, 자율규제기구 역시 동 사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규제대상인 위법 게시물은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계정 및 게시판에 임의로 작성한 게시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 범죄모의, 테러 및 폭력 선동, 아동포르노 등 독일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중 21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게시물을 의미한다 (황태희, 2018).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6개월 단위로 네트워크 집행법에 따라 처리된 사안에 대해 통계를 산출하고 독일어로 작성된 투명성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소셜미디어 기업주에 대해 최대 500만 유로, 해당 기업에는 최대 5,000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2. 대리인 관련 조항

네트워크 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대부분이 해외사업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독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네트워크 집행법에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을 위해 위법한 게시물 유포와 관련해서 독일 법원에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때 서면을 받을 수 있는 독일 내 소송대리인 및 수령위탁자를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제 5조 1항 및 2항)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황태희, 2018). 지정되어 있는 송달대리인의 인적사항은 홈페이지에 기재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위법 게시물에 대한 독일 법정에서의 재판절차 및 과태료 등과 관련된 내용이 송달대리인에게 전달된다. 또한, 소송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요청을 위해 독일 내에 위탁수령인 역시 지정하여야 한다. 위탁수령인은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수령 여부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회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독일 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해외사업자에 규제를 강화한 것은 네트워크 집행법에서 의미 있는 조항으로 평가받는다. 페이스북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가 독일 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그간 사법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었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 역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절 EU 디지털서비스법

1. 개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증가 및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등장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법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2020년 12월 15일 EU는 이용자의 기본 권익 보호,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 삭제 및 사업자의 책임 조정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이하 DSA)⁶⁾을 제안하였다. DSA는 EU 회원국 내에 직접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regulation)의 형태이다 (김현수 외, 2020).

6)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proposal_for_a_regulation_on_a_single_market_for_digital_services.pdf

DSA에서는 법안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에 대해 주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서비스 종류 및 그 서비스의 영향력 등에 따른 차이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 수단을 제안한다 (이재호, 2021). 즉, DSA를 적용받는 대상은 중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으며 앞의 서비스가 뒤의 서비스에 포괄되는 개념으로 뒤의 서비스로 갈수록 의무가 추가된다. 여기서 중개 서비스는 인터넷접속서비스, 도메인이름 등록서비스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통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단순 전달,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캐싱서비스, 정보를 저장하는 호스팅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앱스토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대규모는 EU 인구의 10% 이상을 의미한다.

DSA의 주요 내용은 크게 불법 콘텐츠 삭제, 투명성 강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로 볼 수 있다 (김현수 외, 2020). 불법 콘텐츠 삭제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콘텐츠 신고에 대한 메커니즘을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분쟁 관련 정보, 콘텐츠 조정을 위해 사용된 자동화 수단 관련 정보, 타겟 광고에 사용된 주요 매개변수 등 온라인 광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로는 플랫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리스크 평가, 완화, 외부감사, 규정준수 책임자 지정,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 접근 권한 제공 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천 시스템의 주요 매개변수 공개 및 이용자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2. 대리인 관련 조항

DSA에서 사업자들이 서비스에 상관없이 준수해야 할 의무 중 하나로 규제부처와의 소통지점을 구축하여 명확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이용조건 제시 및 투명성 보고 의무 부담이 있다. 이에 DSA 제11조(법적대리인)에 따르면, EU 내에 소재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원국 중 한 곳에 법적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법적대리인은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

제 4 절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 개요

일본 총무성은 전기통신 시장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고, 통신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법인 등이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관련 규정의 정비를 실시하였다. 외국 법인 등이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등 국내 이용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외국 법인 등에 대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집행에 한계가 있으며, 일본 이용자의 보호가 충분히 되지 않고, 국내외 사업자 간 경쟁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의 과제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외국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이용자 정보의 대량 유출이나 대규모 통신 장애 등이 발생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2020년 5월 22일 외국 법인 등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신고시 국내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표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고시 국내 대표자 등의 지정 의무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 개선 명령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경우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위반한 자의 공표가 가능하도록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였다.

[그림 4-1] 일본 외국 법인 등의 국내 대표자 지정



자료: 総務省, 電気通信事業法及びNTT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概要)

총무성은 2021년 2월 12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및 법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시행 규칙 개정 방안 및 외국법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에 관한 지침을 공표하였다. 이에 앞서 2020년 12월 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계 조례 등 정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집하였고, 2021년 2월 12일 시행 규칙 개정 방안 및 의견 모집 결과를 반영한 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시행 규칙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을 위해 ① 등록 또는 신고시에 새롭게 필요한 정보와 문서, 양식, 신청 방법 등 ② 법령 등에 위반 행위를 한 자의 성명 등의 공표 방법 및 공표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등 시행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편, 총무성은 시행규칙 개정 방안과 더불어 의견 모집 결과를 반영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본 지침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외국 법인 등에 적용되는 경우 기준, 국내 대리인 지정 및 권한 등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다.

2. 대리인 관련 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 10조 개정 신규대조 조문을 살펴보면, 제 10조 1항 2호에 외국법인 등(외국법인 및 단체, 외국에 주소를 둔 개인)은 등록 신청서 또는 신고 첨부서류에 국내 대표자 또는 국내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국내 주소를 기재하도록 신설하였다.

〈표 4-2〉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10조 신규대조 조문

개정안	현행
제10조 전조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무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기 재한 신청서를 총무 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좌동)
二 외국법인 등(외국법인 및 단체, 외국에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하 본 장 및 제118조 제4호에서도 동일)에서는 국내 대 표자 또는 국내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국내 주소	(신설)
三 업무 지역	二 (좌동)
四 전기통신설비의 개요	三 (좌동)
五 그 밖에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다음으로 시행 규칙 개정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개정법 시행을 위해 ① 등록 또는 신고시에 새롭게 필요한 정보와 문서, 양식, 신청 방법 등 ② 법령 등에 위반 행위를 한 자의 성명 등의 공표 방법 및 공표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등 시행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① 등록 또는 신고시에 새롭게 필요한 정보,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외국 법인 등이 등록 또는 신고 시, 국내대표자 등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국내 대표자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표 사본, 권한 부여 인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 법인 등의 등록 또는 신고 방법은 국내 대표자 등의 주소를 관할하는 종합 통신국을 통해 가능하다.

② 법령 등에 위반 행위를 한 자의 성명 등의 공표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대해 살펴보면, 법령 등에 위반 행위를 한 자의 성명 등의 공표 방법은 인터넷 및 기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법령 위반 행위를 한 자를 공표하기 전 위반한 자 또는 국내 대표 등에 통지를 한 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의 관점에서 긴급 공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 위반 행위를 한 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표 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규칙 등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 개요

① 등록 또는 신고시에 새롭게 필요한 정보와 문서, 양식, 신청 방법 등	
새롭게 필요한 정보	• 사업자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록 신청서, 신고서 등의 양식에 추가] • 외국 법인 등의 경우에는 국내 대표자 등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록 신청서, 신고서 등의 양식에 추가]
새롭게 필요한 서류	• 국내 대표자 등의 등기 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또는 주민표 사본(개인의 경우) • 권한 인증서(총무성이 발급한 통지를 박을 수 있는 권한을 사업자로부터 국내 대표 등에 부여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
외국 법인 등의 신청 방법	• 국내 대표자 등의 주소를 관할하는 종합 통신국 등을 통해

② 법령 등에 위반 행위를 한 자의 성명 등의 공표 방법 및 공표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법령 등에 위반 행위를 한 자의 성명 등의 공표 방법	• 인터넷 및 기타 적절한 방법 이용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 법령 위반 행위를 한 자의 성명 등을 공표 할 때 미리 위반한 자 또는 국내 대표 등 통지를 한 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의 관점에서 긴급 공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 등에 위반 행위를 한 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자료: 総務省, 電気通信事業法及び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2年法律第30号)の施行に向けた関係省令案等について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본 지침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외국 법인 등에 적용되는 경우 기준, 국내 대리인 지정 및 권한 등에 대해 구체화하였다. 지침은 총 네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1) 전기통신사업법이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 등에 적용되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 3) 국내대리인 지정 등, 4) 해당 전기통신사업법의 구체적인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이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 등에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외국 법인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되는 경우는 ① 외국법인 등이 일본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② 외국 법인 등이 일본인과 함께 해외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외국 법인 등이 일본인과 함께 해외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i) 서비스가 일본어로 제공되는 경우, ii) 유료 서비스에 대한 결제 통화가 일본 엔화를 포함하는 경우, iii) 광고, 판촉 등이 일본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것으로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일본인과 함께 해외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표 4-4〉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에 관한 지침(1)

1. 전기통신사업법이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 등에 적용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법인 등이 일본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 법인 등이 일본인과 함께 해외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외국 법인 등이 일본에 있는 사람(방일 외국인 포함)과 함께 해외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외국법인 등의 사업운영은 “외국법인 등이 일본에 있는 사람과 해외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법인 등이 일본인과 함께 해외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i. 서비스가 일본어로 제공되는 경우.
 - ii. 유료 서비스에 대한 결제 통화가 일본 엔화를 포함하는 경우.
 - iii. 광고, 판촉 등이 일본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것으로 하는 경우

자료: 総務省, 外国法人等が電気通信事業を営む場合における電気通信事業法の適用に関する考え方

2) 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를 살펴보면, 외국 법인 등이 위의 전기통신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 법인 등이 일본에 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통신사업을 하는 경우 등록이 아닌 신고를 요한다.

〈표 4-5〉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에 관한 지침(2)

2. 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
 - 외국법인 등이 1의 전기통신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9조) 또는 신고(16조 1항)를 요구하되, 제164조 1항의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등록 및 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일본 전기통신사업 시장진입 매뉴얼(Manual for Market Entry into Japanese Telecommunications Business)에 나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는 일본 전기통신사업자 시장진입 매뉴얼[부칙판]에 제시되어 있다.
 - 외국법인 등이 일본에 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통신사업을 하는 경우 등록이 아닌 신고를 요하는 통신사업자가 된다.
 -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해 명목상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 등이 제공하는 통신서비스가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법인 등은 등록 또는 신고를 요하는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자료: 総務省, 外国法人等が電気通信事業を営む場合における電気通信事業法の適用に関する考え方

3) 국내대리인 지정 등을 살펴보면, 국내 대리인 지정은 외국 법인 등이 통신사업자 등록 혹은 신고 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총무성에 제출해야 하며, 국내 대리인 교체 시에도 새로운 국내 대리인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은 외국 법인 등을 대표하여 다음의 두 가지 권한을 갖는다. 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총무부 장관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한,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1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가 성명 등을 공표하기 전 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통지를 받는 권한이다.

〈표 4-6〉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에 관한 지침(3)

3. 국내대리인 지정 등

- 외국 법인 등이 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고하는 경우 외국법인 등은 국내대리인 또는 국내대리인(이하 "국내대리인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총무성에 제출한다. 만일 외국 법인 등이 국내 대리인 등을 교체하는 경우, 새로운 국내대리인 등을 총무성에 제출해야 한다.
- 국내 대표자 등은 외국 법인 등을 대표하여 (i)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총무부 장관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한과 (2) 전기통신사업법 제1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가 성명 등을 공표하기 전 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통지를 받는 권한을 가지도록 요구된다.
- 국내 대표자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총무성과 외국법인 등의 사이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의 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総務省, 外国法人等が電気通信事業を営む場合における電気通信事業法の適用に関する考え方

마지막으로 4) 해당 전기통신사업법의 구체적인 규정 등을 살펴보면, 외국 법인 등에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구체적인 규정은 원칙적으로 위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에 기술된 국내 대표자 지정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유형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4-7〉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에 관한 지침(4)

4. 해당 전기통신사업법의 구체적인 규정

- 외국법인 등에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구체적인 규정은 원칙적으로 3에 기술된 국내 대표자 등의 지정을 제외하고 동일한 유형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 등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해외에서 이메일 서비스, 메시지 서비스 등 타인의 통신을 중개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아래의 주요 규정을 적용한다.

- 비밀의 보호 (제4조)

구체적인 기준은 전기통신사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지침(2017년 총무성 고시 제152호, 2017년 총무성 고시 제297호에 따른 최종 개정판) 및 동의서(Draft Reference Document on How to Obtain Consent) 참조한다.

- 이용의 공정성 (제6조)

- 전기통신사업의 신고 (제16조)

- 사업의 정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제18조)

- 전기통신사업의 중지 및 중지 안내(26조 4항)

구체적인 표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보호규칙 지침을 참조한다.

- 전기통신사업 중단 및 중대사고에 대한 신고(28조)

구체적인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지침 및 전기통신사고 관련규정을 참조한다.

- 업무 개선명령 (제29조)

구체적인 기준은 통신비밀유지 방해 방지하기 위한 업무개선명령 발급지침 초안을 참조한다.

- 신고 및 검사 (166조)

- 법률 및 규정 위반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성명 등의 공표 (제16조의2)

자료: 総務省, 外国法人等が電気通信事業を営む場合における電気通信事業法の適用に関する考え方

제5장 국내대리인 제도 현황 및 이슈 분석

제1절 국내대리인 제도 현황

해외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법, 개인 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개인정보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사업자 대상, 기준 및 역할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반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되어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⁷⁾ ‘기간통신역무’는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로 정의된다.⁸⁾ 그리고 ‘부가통신역무’(즉 부가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로 정의되는데,⁹⁾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가통신서비스(“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¹⁰⁾, (2) 앱 마켓사업(“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

7)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

8)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다만,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에서 제외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단서.

9)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

10)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23호, 개정·시행 2020.5.26) 제2조. 다만, 제3조에 따라 인터넷전화서비스(“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의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기간통신역무로 간주된다.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¹¹⁾, (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¹²⁾ 등이 부가통신서비스의 유형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는 이 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 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하고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어야 하고,¹³⁾ 이러한 지정 의무 대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 법상의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되고,¹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정의된다.¹⁵⁾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상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는 이 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러한 지정 의무 대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보통신서비스’에 해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되어야 하고,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상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보통신서비스’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지정 사업자 기준에 있어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20. 8. 5.일 시행)에서는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1(‘20. 8. 5.일 시행)에서는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20. 12. 10.일 시행)

1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3호.

12)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는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된다.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가목 및 나목.

1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함)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한다.

14)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2호.

15)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단서 참조.

에서는 이용자수, 트래픽 양 등의 기준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그 역할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정보통신망법의 국내대리인의 경우 동법 위반 혐의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국내대리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의 국내대리인은 동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표 5-1〉 관련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제도 현황

구분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기정통부
근거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 20.8.5.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1 (' 20.8.5.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 (' 20.12.10. 시행)
지정의무 사업자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동법위반 혐의 등으로 제64조제1항에 따른 물품 서류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년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개인정보 저장·관리 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이상인 자 •동법위반 혐의 등으로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 품·서류자료 제출을 요 구받은 자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국내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국내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자
대리업무	•동법위반 혐의 등에 따른 물품·서류자료 제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 통지· 신고 •동법위반 혐의 등에 따른 물품·서류자료 제출	•동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국내 대리인 공개방침	다음 각호의 사항 공개 •국내대리인 성명 •국내대리인 주소	다음 각호의 사항 공개 •국내대리인 성명 •국내대리인 주소	-
과태료 규정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먼저 정보통신망법 상 국내대리인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국외(해외) 사업자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게 하여 개인정보보호업무와 더불어 규제기관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자료요청 등 업무연락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18. 8월 정보통신망법에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 2. 4. 개정, '20. 8. 5.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서의 기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었고, 이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되는 경우 자료제출을 대리하도록 하였다.

국내대리인 적용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매출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여기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①전기통신사업자와 ②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③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의미하고,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어야 한다.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국인을 이용 대상 중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지, ▲국내에 사업 신고 등을 하였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모든 해외사업자가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중 하나의 기준에라도 해당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먼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매출액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이 아닌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에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 역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국내대리인의 역할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물품 및 서류 등의 자료 제출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내대리인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신속한 절차 진행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별도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국적은 한국인일 것을 요하지 않으나 규제 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하나 또는 복수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국내대리인이 복수의 해외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대리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대리인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를 위해 언어 등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도록 하였다. 적용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자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국내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이 주어진다. 먼저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 필요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 등, 제39조의4에 따른 통지·신고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 및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 ▲정당한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소명,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법 위반, 민원 접수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이다. 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국내대리인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적용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여기서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국내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국내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주어지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이용자 피해를 예방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 고지 및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외에 온라인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디자인 상표법 등에서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타법에서도 국내대리인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부록 02]참고).

제2절 국내대리인제도 관련 이슈

본 장에서는 국내대리인제도가 시행된 이후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대리인제도가 2018년 도입된 이후 해외사업자가 지정한 국내대리인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해외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국내대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설립된 페이지 컴퍼니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⁶⁾ 조사에 따르면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에서 지정한 국내대리인이 각기 다른 법인을 지정하여 법인명은 다르나 주소지가 동일하고 직원들의 근무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페이지 컴퍼니의 형태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표 5-2〉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

사업자명	대리인명	주소
Google	디에이전트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Facebook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주)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Amazon	제너럴에이전트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Apple	에이피피에이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자료: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9/2021041901160.html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국내대리인 실태조사 시(6월, 9월 2차례 실시)에도 해외사업자가 기존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제출한 연락처에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몇몇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운영에 문제가 존재하였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국내대리인의 역할은 동 법 위반에 따른 자료 제출로 국내대리인의 소통 및 연락 등과 관련한 책임은 없어 이와 같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내대리인이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국내대리인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연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16) 자료: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9/2021041901160.html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 지정 요건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동법위반 혐의 등으로 제64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및 서류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 기준에 국내 이용자 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이면서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사업자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이용자 수는 많지 않으나 매출액 기준에 해당되어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슈들을 고려하여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 지정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해외 사례 등의 대리인 지정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EU GDPR 및 국내 타법의 경우에는 대리인 지정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EU GDPR에서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 자격 등을 규정하지 않았고, 대신 정부부처 또는 관련 기관인 경우 및 해당 처리가 간헐적·소규모의 개인정보 처리로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이 낮은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의무 면제 조건을 부여하였다.¹⁷⁾ 국내 타법에서도 실질적으로 국내대리인 지정 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다 ([부록02] 참조). 다만, 해외사례 및 타법에서 처럼 국내대리인 지정 자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아 사업자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용자 수 또는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에서는 가입자 수가 2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만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국내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전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

17) <https://tmt.bakermckenzie.com/-/media/minisites/tmt/files/2018/10/representatives-under-art-27-of-the-gdpr-iapp-2018.pdf?la=en>

보가 저장 및 관리되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현재 국내대리인 도입 취지에 비추어 포함되어야 하는 해외사업자를 고려한 후 대리인 지정 기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대리인의 역할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상 국내 대리인 제정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0년 8월 개인정보 관련 사항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은 동법 위반에 따른 자료 제출 업무만 역할로 포함되어 있어 법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 소명 등 규제 기관과의 연락 창구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어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국내대리인은 국내 이용자 보호업무 수행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자료 제출 업무 이외에 수행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해외사업자의 자료 제출 대리업무 이외에도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국내대리인에게 부과 시 제도를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국내대리인제도 통상법적 이슈 검토

국내 온라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조항이 마련되었으나 국내대리인 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WTO/FTA 규범에 대한 합치성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이에 향후 통상 마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법적 이슈 검토가 요구되고 있어 본 장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조치의 WTO/FTA 규범 합치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WTO/FTA 내국민 대우(NT) 의무와 FTA 현지 주재(LP) 의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보고서에 참조한 목록, 약칭 및 인용정보는 [부록01]에 제시되어 있다.

1.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ICT 관련 서비스 분류 이슈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들 간에 이견이 상당하고,¹⁸⁾ GATS 서비스 분류 체계가 본 WTO/FTA 규범 합치성 검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제가 아니

18) UN(2015a), paras. 1.1-1.6 참조. 또한 WTO(2011), para. 11; 한-EU FTA 제7.25(컴퓨터 서비스) 4항 참조.

므로, 논의의 집중을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WTO 서비스 분류 차원에서 'W/120 Subsector 2.C.h 내지 2.C.n'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value-added service)에 해당된다고 가정하고, 이하에서 규범 합치성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2. 내국민대우 의무 합치성 검토

가. 개요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조치가 GATS 제XVII조 1항에 불합치하다고 판정되기 위해서는, (1) 한국이 GATS 서비스 양허표에서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와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공급 방식에 대하여 NT 의무를 약속하였고, (2) 지정 조치가 해당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공급 방식에서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며, (3) '지정 조치가 미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 대우'(전자)와 '한국이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 대우'(후자)를 비교할 때, 지정 조치가 '후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미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소국이 증명해야 한다. 'W/120 Subsector 2.C.h 내지 2.C.n'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조치가 해당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공급 방식(특히 Mode 1)에서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이하에서는 동종성 심사와 불리하지 않은 대우 심사에 관하여 논의한다.

나. 동종성 심사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1)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¹⁹⁾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²⁰⁾[이하 '매출액 기준 지정 의무 대상자'로 칭함], (2)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정보

19)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9조 1항 1호.

20)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9조 1항 2호.

통신망법 제64조 1항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²¹⁾ [이하 ‘사건·사고 기준 지정 의무 대상자’로 칭함]로 한정된다.

GATS 제XVII:1조의 합치 여부 검토를 위하여, 우선 ‘매출액 기준 지정 의무 대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국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간의 동종성 여부와 ‘사건·사고 기준 지정 의무 대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국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간의 동종성 여부를 살펴보자. ‘동종성’(likeness) 결정은 양 서비스 간의 경쟁 관련성의 성질과 한도에 관한 판단이므로 경쟁 조건의 변경 여부를 핵심으로 하는 ‘불리한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 심사에 앞서 결정되어야 한다.²²⁾

우선 ‘Mode 1으로 공급되는 외국사업자 X의 동영상 인터넷스트리밍서비스’와 ‘국내에서 공급되는 국내사업자 甲의 동영상 인터넷스트리밍서비스’ 간의 동종성과 ‘Mode 1으로 공급되는 외국사업자 Y의 스마트폰 메신저서비스’와 ‘국내에서 공급되는 국내사업자 乙의 스마트폰 메신저서비스’ 간의 동종성은 서비스 공급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되므로, 동종성 결정 대상 서비스를 정보통신서비스 전체로 확대할 경우, ‘Mode 1으로 공급되는 외국사업자 Z의 정보통신서비스’와 ‘국내에서 공급되는 국내사업자 丙의 정보통신서비스’ 간의 동종성은 (1) 서비스의 최종용도, (2)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3)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특성, (4) CPC와 같은 서비스 분류와 명세 등과 같은 경쟁 관련성 판단의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동종성이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결정된다면 ‘Mode 1으로 공급되는 외국사업자 Z의 특정 정보통신서비스’(예: SNS)와 ‘국내에서 공급되는 국내사업자 丙의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예: 동영상 인터넷스트리밍서비스) 간의 동종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동종 서비스로 인정되기 위하여 상호 비교되는 서비스들은 ‘정확히’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서비스가 외양이나 크기와 같은 ‘어떠한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동일하다면

2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9조 1항 4호.

22) AB Report, *Argentina - Financial Services*, para. 6.34 참조.

동종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서비스 동종성’과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을 별개로 분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확립된 WTO 법리가 없지만, 적어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 간의 관계에서는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예컨대 ‘Mode 1으로 공급되는 외국사업자 Y의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와 ‘국내에서 공급되는 국내사업자 Z의 스마트폰 메신저서비스’ 간의 동종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메신저서비스를 Mode 1으로 공급하는 외국사업자 Y’는 ‘스마트폰 메신저서비스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국내사업자 Z’의 동종 서비스 공급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미 FTA 제12.2조 1항의 동종상황성 결정 메커니즘은 사안에 따라 상황의 전체성과 규제의 정당한 목적 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GATS 제XVII조 1항의 동종성 메커니즘과는 다른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예컨대 GATS 제XVII조 1항의 동종성 심사에서는 ‘Mode 1으로 공급되는 외국사업자 Y의 스마트폰 메신저서비스’와 ‘국내에서 공급되는 국내사업자 Z의 스마트폰 메신저서비스’ 간의 동종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한-미 FTA 제12.2조 1항의 동종상황성 심사에서 예컨대 외국사업자 Y가 정보통신망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국내대리인 지정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사정)이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된다면, 양자의 동종상황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심사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조치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WTO/FTA 분쟁해결절차에서, 이러한 지정 조치가 시행된 결과, 한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예컨대 미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예: 동영상 인터넷스트리밍서비스를 Mode 1으로 공급하는 외국사업자 X)에게 유해하도록 경쟁 조건이 변경된다고 판정된다면,²³⁾ 지정 조치는 서비스 및 서비스

23) 국내대리인 지정 계약을 체결·유지해야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국내대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가 자신의 행위로 간주된다는

공급자의 동종성이 인정되는 한, GATS 제XVII:1조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고, 동종상황성이 인정되는 한, 한-미 FTA 제12.2조 1항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3. 현지주재의무 합치성 검토

한-미 FTA 제12.5조의 “Neither Party may require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to establish or maintain a representative office or any form of enterprise, or to be resident, in it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the cross-border supply of a service.” 문구는 ‘LP 의무가 유보되지 않은 특정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의 조건으로서, ‘미국 서비스 공급자’(그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미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에게 한국 내에서, (1) 대표사무소, 또는 (2) 회사, 신탁회사, 조합, 개인기업, 합작투자회사,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체, 또는 (3) 이러한 회사 등의 지점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도록 한국이 요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같은 조의 “Neither Party may require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to be resident, in it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the cross-border supply of a service.” 문구는 ‘LP 의무가 유보되지 않은 특정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의 조건으로서, ‘미국 서비스 공급자’(그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미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에게 한국 영역에서 거주·소재하도록 한국이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가 ‘LP 의무가 유보되지 않은 서비스’라고 가정하면, 한국은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의 조건으로서, 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그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미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에게 한국 내에서 (1) 대표사무소, ‘회사, 신탁회사, 조합, 개인기업, 합작투자회사,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체’, 또는 이러한 회사 등의 지점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도록, 또는 (2) 거주·소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조치가 한-미 FTA 제12.5조에 위반되는지를 살펴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조치가 지정 의무 대상자에게 일정 정도 경제·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본다. 한-미 FTA 제12.5조의 취지는 상업적 주재 요건 또는 거주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차단하려는 당사자의 보호무역 조치 부과를 차단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1)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정보통신망법 제41조 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3항의 청소년보호 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를 대신하여 방통위에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는 ‘대리’ 행위로 한정된다.²⁴⁾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조치로 인하여 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경 간 공급이 차단된다고 보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업무가 상당히 단순하고 구체적이며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²⁵⁾

또한 한-미 FTA 제12.5조의 ‘to establish or maintain ... to be resident’ 용어와 달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1항은 GDPR과 마찬가지로 ‘to designate’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⁶⁾ 즉 ‘to designate’ 용어가 실제로 ‘to establish or maintain ... to be resident’ 용어로 기능한다고 볼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과 관련하여 특정 자연인이 한국에 거주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법인을 한국에 설립·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에게 단순히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연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법인’을 서면으로 지정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조치는 한-미 FTA 제12.5조와 불합치하지 않는다고 풀이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회사, 신탁회사, 조합, 개인기업, 합작투자회사,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체’ 또는 ‘이러한 회사 등의 지점’은

24) 정보통신망법 제64조 1항 1호, 2호, 2의2호 및 3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8조 1호 및 2호.

25) 이 점은 정보통신망법상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업무와 비교하면 더욱 도드라진다.

26) GDPR 제80언명, 제4(17)조, 제27조 1항 참조.

정보통신서비스 공급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영업소로 볼 수 있지만, 대표사무소는 이들과 달리, 본사와의 연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무소에 불과하므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한-미 FTA 제12.5조상의 대표사무소로 해석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²⁷⁾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한-미 FTA 제12.5조와의 불합치 가능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한-미 FTA 제23.1조 2항과 GATS 제XIV조에 따른 예외적 정당화 검토

가. 개요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조치가 설령 GATS 제XVII조 1항에 불합치한다고 판정되더라도 지정 조치가 GATS 제XIV조에 합치한다고 한국 정부가 입증한다면²⁸⁾ 지정 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또한 GATS 제XIV조는 한-미 FTA 제12장에 대하여 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한-미 FTA에 편입되었으므로, 설령 지정 조치가 한-미 FTA 제12.2조 및/또는 제12.5조에 불합치한다고 판정되더라도 GATS 제XIV조에 합치한다고 판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 지정 조치는 GATS 제XIV(a)조에 합치하는 조치 또는 GATS 제XIV(c)조에 합치하는 조치로 해석되어야 하고, 더불어 GATS 제XIV조의 두문 요건(chapeau)에도 합치되어야 한다.

여기서 GATS 제XIV(a)조에 합치하는 조치는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조치’를 말하고,²⁹⁾ GATS 제XIV(c)조에 합치하는 조치는 “GATS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조치를 의미한다.”³⁰⁾ 따라서 지정 조치의 목적은 GATS 제XIV(a)조 또는 GATS

27)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대리 업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신속한 절차 진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28) GATS 제XIV조에 따라 적극적 항변을 제기한 분쟁당사자(즉 피소국)가 그에 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박영덕(2017), 100-101쪽 & 296쪽 참조.

29) GATS 제XIV(a)조[“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Member of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r to maintain public order”].

30) GATS 제XIV(c)조[“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제XIV(c)조에서 명시된 목적에 해당되어야 하고, 지정 조치는 GATS 제XIV(a)조의 필요성 요건 또는 GATS 제XIV(c)조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GATS 제XIV(a)조 또는 GATS 제XIV(c)조에 합치하는 조치는 GATS 제XIV조의 두문 요건에도 합치되어야 한다. 즉 동종 조건이 우세한 국가들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³¹⁾ 요컨대 GATS 제XIV(a)조와 GATS 제XIV(c)조에서 요구되는 수단-목적 심사(여기서는 ‘필요성 심사’)를 통과한 후, GATS 제XIV조의 두문 요건 심사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지정 조치는 GATS 제XIV조에 합치한다고 판정되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게 된다.³²⁾

나. GATS 제XIV(a)조와 제XIV(c)조상의 목적의 정당성

우선 GATS 제XIV(a)조상의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지정 조치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공급되는 불법 정보(특히 불법 사행행위에 관한 정보)³³⁾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측면이 있는데, US - Gambling 사건에서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Member of measures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ose relating to: (i) the prevention of deceptive and fraudulent practices or to deal with the effects of a default on services contracts; (ii)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records and accounts; (iii) safety”].

31) GATS 제XIV조 두문 요건[“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lik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services”].

32) Panel Report, Argentina - Financial Services, para. 7.586 참조.

3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 1호(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호(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베팅서비스를 금지하는 조치’의 목적이 GATS 제XIV(a) 조상의 공중도덕을 보호하는 것 또는 공중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점을 고려하면,³⁴⁾ 지정 조치의 목적 역시 공중도덕을 보호하는 것 또는 공중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GATS 제XIV(c)조는 ‘GATS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수단-목적 심사의 ‘목적’으로 명시한다. 여기서 GATS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법률 또는 규정’에는 (1) 기만적이고 기만적인 행위의 방지에 관한 국내법 규정,³⁵⁾ (2) 서비스 계약의 불이행 결과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법 규정,³⁶⁾ (3) 사적 자료의 처리 및 유포와 관계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국내법 규정,³⁷⁾ (4) 개인의 기록과 계정의 비밀 보호에 관한 국내법 규정,³⁸⁾ (5) 안전에 관한 국내법 규정³⁹⁾ 등이 포함된다.

지정 조치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공급되는

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호(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호(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3호[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참조.

34) Panel Report, *US - Gambling*, para. 6.474 참조. 또한 박영덕(2017), 99-100쪽 참조.

35) GATS 제XIV(c)(i)조[“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deceptive and fraudulent practices”].

36) GATS 제XIV(c)(i)조[“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o deal with the effects of a default on services contracts”].

37) GATS 제XIV(c)(ii)조[“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personal data”].

38) GATS 제XIV(c)(ii)조[“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records and accounts”].

39) GATS 제XIV(c)(i)조[“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relating to safety”].

정보가 정보통신망법⁴⁰⁾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국내대리인이 관계 물품·서류 등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지정 조치의 목적은 (1) GATS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기만적이고 기망적인 행위의 방지에 관한 국내법 규정⁴¹⁾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 (2) GATS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서비스 계약의 불이행 결과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법 규정⁴²⁾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 (3) GATS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사적 자료의 처리 및 유포와 관계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국내법 규정 또는 개인의 기록과 계정의 비밀 보호에 관한 국내법 규정⁴³⁾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 (4) GATS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안전에 관한 국내법 규정⁴⁴⁾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⁴⁵⁾

40) 예컨대 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등 참조.

41) 예컨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5항 5호[“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2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참조.

42) 예컨대 정보통신망법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참조.

43) 예컨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2항,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항 6의2호(정보통신망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참조.

44) 예컨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항 6의3호[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참조.

45) 예컨대 ‘정보통신망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 6의2호가 ‘GATS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국내법 규정’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AB Report, Argentina – Financial Services, para. 6.184 참조.

다. GATS 제XIV(a)조와 제XIV(c)조의 필요성 심사

WTO 법리에 따르면 GATS 제XIV(a)조와 GATS 제XIV(c)조에서 요구되는 필요성 요건에 관한 심사는 (1) “계쟁조치가 비록 필수불가결한 조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각각의 사안에서 ① 계쟁조치에 의해서 보호되는 공동의 이익 또는 가치의 중요성, ② 계쟁조치의 목적 실현에 대한 기여, ③ 계쟁조치의 국제무역에 대한 제한적 영향 등의 일련의 고려 요소들을 비교 형량하고”,⁴⁶⁾ (2) “해당 이익 또는 가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계쟁조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목적 달성에 기여하면서도 계쟁조치보다 덜 무역제한적일 수 있는 대안조치들’과 계쟁 조치를 비교 분석하는”,⁴⁷⁾ 즉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모든 고려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모든 고려 요소들을 상호 간으로 평가하는 총체적인 작업”⁴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교형량 결과, ① 계쟁조치가 추구하는 공동의 이익 또는 가치의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② 계쟁조치의 목적 달성에 대한 기여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③ 계쟁조치의 무역제한효과가 적으면 적을수록, 계쟁조치가 필요성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⁴⁹⁾

WTO 분쟁해결절차 또는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GATS 제XIV(a)조와 제XIV(c)조를 적극적 항변으로 원용할 경우, 제소국(예: 미국)이 먼저 한국 정부에게 합리적인 이용 가능한 ‘지정 조치에 대한 대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⁵⁰⁾ 이러한 대안이 제시될 경우, 한국 정부는 첫째, 계쟁조치에 의해서 보호되는 공동의 이익 또는 가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제시된 대안이 ‘계쟁조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목적 달성에 기여하면서도 계쟁조치보다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함으로써 계쟁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다. 둘째, 설령 제시된 대안이

46) 박영덕(2017), 96쪽; Panel Report, *Argentina - Financial Services*, para. 7.661 참조.

47) 박영덕(2017), 97쪽; AB Report, *Brazil - Retreaded Tyres*, para. 178 참조.

48) 박영덕(2017), 97쪽; AB Report, *Brazil - Retreaded Tyres*, para. 182; AB Report, *EC - Seal Products*, para. 5.214 참조.

49) AB Report, *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paras. 162-163; Panel Report, *Argentina - Financial Services*, paras. 7.681-7.682; AB Report, *Argentina - Financial Services*, para. 6.234 참조.

50) 이러한 주장책임과 증거책임을 제소국이 부담한다고 판정한 사례로는 AB Report, *US - Gambling*, paras. 309-310 참조.

‘계쟁조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목적 달성에 기여하면서도 계쟁조치보다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에 해당되더라도, 재정적, 기술적, 행정적 등의 측면에서 한국 정부에게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함으로써 계쟁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다.⁵¹⁾

지정 조치에 의해서 보호되는 공동의 이익 또는 가치의 중요성, ② 지정 조치의 목적 실현에 대한 기여, ③ 지정 조치의 국제무역에 대한 제한적 영향 등의 일련의 고려 요소들을 비교형량하고, 지정 조치에 의해서 보호되는 공동의 이익 또는 가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계쟁조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목적 달성에 기여하면서도 계쟁조치보다 덜 무역제한적일 수 있는 대안’이 실제로 제시될 수 있는지를 예상해 보면, 지정 조치는 WTO 분쟁해결절차 또는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GATS 제XIV(a)조 및/또는 제XIV(c)조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정 조치의 목적은 GATS 제XIV(a)조상의 ‘공중 도덕의 보호’ 목적뿐만 아니라 GATS 제XIV(c)조에서 예시된 (1) GATS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기만적이고 기만적인 행위의 방지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 (2) GATS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서비스 계약의 불이행 결과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법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 (3) GATS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사적 자료의 처리 및 유포와 관계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국내법 규정 또는 개인의 기록과 계정의 비밀 보호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 (4) GATS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안전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에 모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지정 조치에 의해서 보호되는 공동의 이익 또는 가치는 상당히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지정 조치의 무역제한적 효과는 최소침해적으로 보인다. 지정 의무 대상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 계약을 체결·유지해야하고,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하며,⁵²⁾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고⁵³⁾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⁵⁴⁾ 국내대리인의 정보 통신망법 위반 행위가 자신의 행위로 간주되므로,⁵⁵⁾ 지정 조치가 지정 의무 대상자에게

51) 박영덕(2017), 97-98쪽; AB Report, *US - Gambling*, paras. 308 & 311 참조.

52)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3항.

53) 정보통신망법 제76조 2항 4의3호.

54) 정보통신망법 제64조 4항.

작용하는 경제·경영상 부담은 무역제한효과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서 설립한 법인(자회사)이 정보통신서비스 이외의 사업(예: 광고 대행 서비스)을 수행할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⁵⁶⁾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지정 의무 대상자는 자회사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제3의 법인 또는 자연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만약 정보통신망법이 이러한 경우에는 자회사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강제했다고 가정할 경우,⁵⁷⁾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미치는 무역제한적 효과와 현행 지정 조치가 초래하는 무역제한적 효과를 비교하면 현행 지정 조치가 최소무역침해적이라는 점이 더더욱 분명해 진다. 또한 지정 조치는 국적 요건을 부과하지 않기에,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누구라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⁵⁸⁾ 한국어 의사소통 요건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국내 이용자의 관련 고충을 처리하고 규제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자격이므로, 이로 인해 불합리한 무역제한적 효과가 초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1)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업무와 비교할 때, 정보통신망법상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업무가 상당히 단순하고 제한적이라는 점,⁵⁹⁾ (2) 지정 의무 대상자는 하나 또는 복수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국내 대리인이 복수의 해외 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다는 점,⁶⁰⁾ (3) 지정 의무 대상자 중에서 특히 ‘매출액 기준 지정 의무

55)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4항.

56) 방통위 · KISA(2019), 2쪽 & PIPC · KISA(2020), 2쪽[“입법 취지인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고충처리, 개인정보 침해신고 시 규제 집행 등을 고려하여 영업소인지 여부가 결정되며, 한국에 별개의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됨”] 참조.

57) 이러한 가정을 실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시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등11인), 의안번호 2110518, 발의 2021.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등11인), 의안번호 2110519, 발의 2021.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등11인), 의안번호 2110522, 발의 2021.6.2 참조.

58) 방통위 · KISA(2019), 4쪽 & PIPC · KISA(2020), 4쪽 참조.

59)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1 1항 1호 내지 3호;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1항 3호 참조.

대상자'의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이 낮지 않아 영세한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외된다는 점, (4)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1항에서 이용자 수가 열거되었음에도 시행령 제19조 1항에서는 '이용자 기준 지정 의무 대상자'가 제외된 점, (5) 제재규정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한정되고,⁶⁰⁾ 과태료 부과 역시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부과된다는 점 등은 한국 정부가 지정 조치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지정 의무 대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지정 조치의 최소침해적 무역제한적 효과를 감안하면, 제소국이 '계쟁조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목적 달성에 기여하면서도 계쟁조치보다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을 실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예상된다.

라. GATS 제XIV조 두문 요건 심사

지정 조치가 필요성 심사를 통과하여 GATS 제XIV(a)조 또는 GATS 제XIV(c)조에 합치한다고 판정되더라도, 추가적으로 GATS 제XIV조의 두문 요건까지 충족해야만 지정 조치는 '최종적으로' GATS 제XIV조에 합치되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다. GATS 제XIV조의 두문 요건은 '동종 조건이 우세한 국가들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자의적인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관한 요건)과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에 관한 요건)으로 각각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문 요건은 무역제한조치가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다할지라도, 자의적 또는 차별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법 절차(due process of law)와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에 그 취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관한 요건과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에 관한 요건은 해석상 서로 밀접한 관련 문맥으로 고려되므로,

60) 방통위 · KISA(2019), 5쪽 & PIPC · KISA(2020), 4쪽 참조. 이에 따라 특정인이 다수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는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PIPC(2020), 8쪽 참조.

61) 정보통신망법은 벌칙 조항을 다수 마련해 두고 있다. 동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참조.

각 요건의 합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상호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⁶²⁾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관련 참고자료(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모두 온라인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⁶³⁾ 지정 조치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에 관한 요건을 일응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정 조치의 도입 과정에서 그리고 지정 조치의 시행에 앞서, 미국 등 관련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정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이 요건은 더욱 용이하게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자의적인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관한 요건과 관련하여, '동종 조건이 우세한 국가들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은 '제소국(미국)과 그 밖의 WTO 회원국들(예: 중국)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뿐만 아니라 '피소국(한국)과 다른 WTO 회원국들(예: 미국, 중국)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⁶⁴⁾ 다만 (1) 예컨대 국내사업자는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통한 이용자 보호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제고가 충분히 담보되므로 지정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고, 반면에 (2) 일부 외국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어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통한 이용자 보호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제고가 충분히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지정 조치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지정 조치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과 다른 WTO 회원국들(예: 미국, 중국) 간의 관계는 동종 조건이 우세한(널리 퍼져 있는) 국가들 간의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정 조치가 예컨대 미국의 지정 의무 대상자와 그 밖의 WTO 회원국 지정 의무 대상자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⁶⁵⁾ 지정 조치는 GATS 제XIV조 두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정되어, 최종적으로

62) AB Report, *US - Gasoline*, DSR 1996:I, p. 3, at 23.

63) 방통위 · KISA(2019)와 KCC · KISA(2019) 참조.

64) AB Report, *US - Shrimp*, para. 150 참조.

65) 참고로 GDPR의 적정성 결정은 그 성격상, 자의적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비판될 여지가 있다. 예컨대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은 적정성 결정상의 자의성 이슈의 예로 제시되기도 한다. Meddin (2020), pp. 1027-1028 참조.

GATS 제XIV조에 합치된다고 판정될 수 있다고 본다.

5. 소결

본 연구는 현행 국내대리인 지정 조치(정보통신망법상 지정 조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정 조치, 전기통신사업법상 지정 조치) 중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지정 조치에 한정하여 수행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조치에 관한 WTO/FTA 합치성 분석은 GATS 제XVII조(NT)와 한-미 FTA 제12장의 2개 조항(NT 조항과 LP 조항)에 한정되었다.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즉 ‘W/120 Subsector 2.C.h 내지 2.C.n’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하여, 한국은 GATS 서비스 양허표에 MA뿐만 아니라 NT에 대해서도 Mode 1 내지 Mode 4에 대한 조건 및 제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한-미 FTA에서 ‘현행 조치 또는 미래 조치에 대한 NT 의무 유보 사항과 LP 의무 유보 사항’을 한국의 제I부속서 또는 제II부속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GATS 제XVII조, 한-미 FTA 제12.2조 1항, 한-미 FTA 제12.5조 등은 지정 조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GATS 제XVII조 및 한-미 FTA 제12.2조 1항상의 NT 의무와 관련하여, 지정 조치는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이 인정되는 한, GATS 제XVII:1조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과, 동종상황성이 인정되는 한, 한-미 FTA 제12.2조 1항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한-미 FTA 제12.5조상의 LP 의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한-미 FTA 제12.5조상의 대표사무소로 해석되는 한, 지정 조치는 한-미 FTA 제12.5조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지정 조치가 WTO/FTA 분쟁해결절차에서 GATS 제XVII조, 한-미 FTA 제12.2조 1항, 한-미 FTA 제12.5조 등에 불합치한다고 판정되더라도, (1) 지정 조치에 의해서 보호되는 공동의 이익 또는 가치는 상당히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판단되고, (2) 지정 조치의 무역제한효과가 최소침해적으로 보이며, (3) 제소국이 ‘계쟁조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목적 달성에 기여하면서도 계쟁조치보다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을 실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지정 조치가 GATS 제XIV(a)조 및/또는 제XIV(c)조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정 조치는 GATS 제XIV조 두문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만 GATS 제XIV조에 최종적으로 합치된다고 판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방안 도출

제1절 국내대리인 운영 현황 실태조사

정보통신망법 상 국내대리인의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기 전까지 국내대리인 운영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하기 쉽지 않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의 국내대리인과 다르게 이용자 민원 관련 업무 등이 역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가 없는 경우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전기통신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국내대리인은 민원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정보통신망법 상 국내대리인의 경우 동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2020년 9월 개인정보위원회는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의 해외사업자가 개인정보 관련 민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등을 포함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것과는 다르게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까지 자료 제출 등에 대해 요구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상 국내대리인 제도의 경우 주기적인 실태조사 시행을 통해 운영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매 분기 또는 반년을 주기로 공문 및 이메일을 발송하여 회신 여부를 확인하고 유선 연결에 대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등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대리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EU GDPR 및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에서 처럼 개인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EU GDPR에서 기업 등이 역내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는 각각의 정보처리자 및 수탁처리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한 명의 개인을 주된 연락처로 지정하고 서비스 계약에 기재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에서는 독일 내의 소송 관련한 송달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내대리인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 대리인으로써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국내대리인 역할 강화

국내대리인 업무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국내대리인의 역할은 동법 위반 혐의 등에 따른 물품 및 서류자료 제출에 한정된다. 반면 전기통신사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해 관련된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국내대리인 역할에는 국내 이용자 보호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가 자료 제출 업무 이외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상 국내대리인 제도 역시 도입 취지인 국내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 조성에 부합하기 위해 현재 자료 제출 업무 이외에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업무 등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해외사업자에 대해 민원 접수 등의 추가적인 역할을 국내대리인에게 부여 시 국내 온라인 이용자 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대리인에 부여할 수 있는 역할로는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따른 민원 접수 업무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의 보편화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온라인 사생활 침해 등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서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박아란, 2020). 임시조치제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삭제·임시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권리 침해를 받은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접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제44조의2)'와 '임의의 임시조치(44조의3)'를 규정하였고,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록 03]참고).

그러나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사업자에 비해 사생활 침해 게시물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미비해 온라인 이용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재되는 경우 국내사업자와는 다르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에서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광고 수익과 연령 제한 조치를 취하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만 미국 본사에서 해지 조치를 한다 (박아란, 2020).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국내에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아 게시물 삭제까지 몇 주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한국에 법인이 존재하더라도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을 비롯한 해외사업자의 경우 게시물과 관련된 관리 및 운영 등은 미국의 본사가 담당하고 있는 반면, 한국 법인은 대체로 마케팅이나 홍보 사무소 등의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박아란, 2020). 따라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불법 게시물의 경우 즉각적인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데 해외사업자의 경우 자체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시일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대리인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게시물 관련 민원 접수 역할을 부여하면 해외사업자로부터 국내 이용자 보호라는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대리인 지정 의무사업자 지정 관련

정보통신망법 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은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100억원 이상 및 동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제64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및 서류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낮으나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사업자들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이용자가 적으나 매출액이 높아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 제도 실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용자 수를 의무 사업자 지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에서도 일정한 회원 수 (200만 명 이상)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국내 대리인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국내대리인 역시 이용자 수 기준으로 의무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다.

제4절 제도 홍보 및 교육

실질적으로 국내대리인제도 시행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지정 사업자를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에 교육 자료 등을 발송하여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국내대리인 제도 하에서는 대리인의 역할이 자료 제출 등에 한정되어 있어 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대리인에 추가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제 7장 결론 및 시사점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됨과 동시에 해외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였고, 이에 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사업자에 대해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국내대리인제도 운영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외사업자가 페이퍼 컴퍼니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밝혀졌으며, 국내대리인의 역할이 동법 위반 또는 혐의에 의한 자료 제출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대리인 제도 관련 이슈 사항을 발굴하고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해외에서 자국 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사업자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유사 제도 사례인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EU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이하 DSA) 및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제도의 문제점을 식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내대리인제도는 해외사업자가 페이퍼 컴퍼니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대리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EU GDPR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정된 국내대리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U GDPR 및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에서는 개인 담당자를 지정하여 알리도록 함으로써 대리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개보위로 이관됨에 따라 국내대리인의 역할이 동법 위반 등에 의한 자료 제출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대리인제도의 국내 온라인 이용자 보호라는 도입 취지에 더욱 부합하기 위해 불법 및 사생활 침해 게시물 등에 대해 대리인에게 민원 접수 업무 등 역할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특히, 국내대리인에 추가적인 역할 부여 시 위법한 콘텐츠 등에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상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동법 위반 또는 혐의가 있는 사업자로 되어있다. 그러나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 대리인 지정 사업자 선정 기준에 자국 내 이용자 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자국 온라인 이용자가 많은 해외 사업자 위주로 대리인을 지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는 점 등을 참고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 기준에 이용자 수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11.26)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KISA(20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 2020. 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2020년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2020.9.9) 속기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3.3.), 인터넷, 코로나19 시대에 전국민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 김현수, 전성호. 2020.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 이재호. 2021. EU 디지털서비스법과 국내 소비자법의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제 111호
- 황태희. 2018. 인터넷 게시물에의 규제와 이용자보호. 법학논문집, 42(2).
- 박아란. 2020. 디지털 인격권 침해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비교법 연구. 한 국언론학보, 64(3), 5-46.
- 박영덕(2017), 박영덕, 국제통상법 기본 규정 초해, 제2판, 해리, 2017.
- 방통위 · KISA(2019),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 2019. 3.
- 방송통신위원회(2014.1.28), 방통위, 구글 본사에 과징금 부과 보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1.28.), 2020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 대비 5.5% 증가
- 박노형, 정명현. 2019. EU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토적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법제연구 제 56호
- 이규엽, 엄준현. 2020. EU GDPR 위반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연구자료 20-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한영 · 차성민(2018),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8-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1.1), 2020년 한국미디어패널 조사결과 주요 내용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한국소비자원. 2020. 2020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2020.3), 2020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인터넷진흥원(2021.8.12),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보도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3),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3), 2019 한국 인터넷 백서

해외 문헌

Adobe(2020.6), Digital Economy Index
 Broadman (1993) Harry G. Broadma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n Servic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AFTA,” The International Lawyer, Vol. 27, No. 3 (1993), pp. 623-646
 GATS(1994),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Republic of Kore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GATS/SC/48 (1994.4.15)
 GATT(1991), GATT Secretariat,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 Note by the Secretariat, MTN.GNS/W/120 (1991.7.10.)
 KCC · KISA(2019),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Guide on Designating a Domestic Representative in Korea, March 2019
 Meddin(2020), Elisabeth Meddin, “The Cost of Ensuring Privacy: How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cts as a Barrier to Trade in Violation of Articles XVI and X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35, Iss. 4, Article 8 (2020), pp. 997-1036
 Meléndez(2010), Luz-Aída Martínez Meléndez, “NAFTA, Tourism, and Environment in Mexic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Vol. 10 (2010), pp. 107-131
 Statista(2020.12), Retail e-commerce sales worldwide from 2014 to 2024 (in billion U.S. dollars)

Statista(2021.1), E-commerce share of total global retail sales from 2015 to 2024

Statista(2021.7), Leading online companies ranked by revenue from 2017 to 2020

UN(1991), United Nations,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United Nations Publication: New York, 1991), ST/ESA/STAT/SER.M/77

UN(2015a), United Nations, New issues requiring guidance in the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CPC), Meeting of the Expert Group on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s New York, 19-22 May 2015, ESA/STAT/AC.289/20, 12 May 2015

UN(2015b), United Nations,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CPC): Version 2.1 (United Nations Publication: New York, 2015), ST/ESA/STAT/SER.M/77/Ver.2.1

WTO(1996), WTO,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Questions and Replies - Services - Addendum, WT/REG4/1/Add.2 (1996.10.15)

WTO(2003), WTO, Republic of Korea: Draft consolidated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 Revision, S/DCS/W/KOR/Rev.1 (2003.4.11)

WTO(2011),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Work Program on Electronic Commerce: Ensuring that Trade Rules Support Innovative Advances in Computer Applications and platforms, such as Mobile Applications and the Provision of Cloud Computing Services, S/C/W/339 (2011.9.20)

WTO(2016), WTO, Committee on Specific Commitments,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5 October 2016: Note by the Secretariat, S/CSC/M/77(2016.11.21)

総務省, 電気通信事業法及びNTT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概要)

総務省, 電気通信事業法及び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令和 2 年法律第30号) の施行に向けた関係省令案等について

総務省, 外国法人等が電気通信事業を営む場合における電気通信事業法の適用に関する考え方

부 록

[부록 01] WTO/FTA 내국민대우의무 및 현지주재의무

1. WTO/FTA 내국민대우 의무

가. WTO/FTA 서비스 시장 개방 약속 방식

WTO/FTA 차원에서 서비스 시장 개방을 약속하는 방식은 ‘네거티브 목록 방식’(negative list approach)과 ‘포지티브 목록 방식’(positive list approach)으로 대별된다. 우선 GATS와 EU式 FTA가 채택하는 ‘포지티브 목록 방식’을 따르면, “WTO 회원국 또는 해당 FTA 당사자가 특정 서비스 분야와 공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시장 접근(Market Access: MA) 약속,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NT) 약속 및 추가적 약속(Additional Commitment)]을 자국의 서비스 양허표에서 기재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에 대하여 그러한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⁶⁶⁾ 반면에 ‘네거티브 목록 방식’을 따르면, “해당 FTA 당사자가 특정 서비스·투자 분야의 현행 조치 또는 미래 조치를 관련 의무[NT 의무,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T) 의무, 현지 주재(Local Presence: LP) 의무,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 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SMBD) 의무]와 함께, 해당 유보 목록에 명시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는 그러한 현행 조치 또는 미래 조치에 대한 특정 의무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될 수 있게 된다.”⁶⁷⁾

나. WTO/FTA NT 의무의 골격과 공통 요건

WTO/FTA NT 의무의 골격은 GATS 제XVII조 1항과 한-미 FTA 제12.2조 1항에서 잘 드러난다. 우선 GATS 제XVII조 1항은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66) 박영덕(2017), 376쪽. 다만 이 방식을 따르더라도 ‘MFN 의무 면제 목록’은 ‘네거티브 목록 방식’으로 작성된다.

67) 위의 책, 같은 쪽.

그 양허표에 명시된 여하한 조건 및 제약사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⁶⁸⁾ 각 회원국은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관하여,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여타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⁶⁹⁾ 한-미 FTA 제12.2조 1항은 이보다 더 간략하게 “각 당사국은 자국이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⁷⁰⁾에게 동종 상황에서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다.⁷¹⁾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차이(“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그 양허표에 명시된 여하한 조건 및 제약사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는 문구의 유무)는 서비스 시장 개방 약속에 관하여 GATS가 ‘포지티브 목록 방식’을 취하고 한-미 FTA가 ‘네거티브 목록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 GATS 제XVII조와 한-미 FTA 제12.2조 간에 근본적인 차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 제12.6조 1항에 따라,⁷²⁾ 특정 서비스

68) GATS 서비스 양허표상의 NT 제한사항으로는 서비스 공급에 관한 보조금 조치(subsidy measures), 조세 조치 및 그 밖의 재정 조치(수수료, 부과금 등)[tax measures and other financial measures (fees, charges, etc.)], 국적 요건(nationality requirements), 거주 요건(residency requirements), 면허 및 자격 취득 요건(licensing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등록 요건(registration requirements), 승인 요건(authorization requirements), 기술 이전·훈련 요건(technology transfer/training requirements), 현지 서비스 사용 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등이 예시될 수 있다. 박영덕(2017), 593-594쪽 참조.

69) GATS 제XVII조 1항[“In the sectors inscribed in its Schedule, and subject to any conditions and qualifications set out therein, each Member shall accord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in respect of all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service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70) 한-미 FTA 제12.2조(NT)와 제12.3조(MFN)의 ‘service suppliers’ 용어는 GATS 제II조와 제XVII조에서 사용되는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한-미 FTA 제12.13조(정의)의 각주 10. 따라서 필자는 본 보고서에서 한-미 FTA 제12.2조상의 ‘서비스 공급자’ 용어를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로 풀어서 사용한다.

71) 한-미 FTA 제12.2조(National Treatment) 1항[“Each Party shall accord to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service suppliers.”].

72) 한-미 FTA 제12.6조(Non-Conforming Measures) 1항[“Articles 12.2 through 12.5 do

분야에 대하여 ‘현행 조치 또는 미래 조치에 대한 NT 의무 유보 사항’을 한국의 제I부속서(현행 조치 유보) 또는 제II부속서(미래 조치 유보)에 명시한 경우, 유보 목록에 명시된 이러한 불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 NCM)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하여 NT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국이 특정 서비스를 GATS상으로 전혀 양허하지 않았고, 한-미 FTA상으로도 전면적으로 유보하였다면, 해당 서비스 분야에 관한 조치에 GATS 제XVII조에 따른 NT 의무와 한-미 FTA 제12.2조에 따른 NT 의무가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양자에는 차이가 없다.

한국의 서비스 무역 조치에 대하여 예컨대 미국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소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계쟁조치가 GATS 제XVII조 1항에 불합치한다는 판정을 얻기 위하여, 미국은 (1) 한국이 자국의 서비스 양허표에서 관련 서비스 분야와 관련 서비스 공급 방식에 대하여 NT 의무를 약속하였다는 점, (2) 계쟁조치가 해당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공급 방식에서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3) ‘계쟁조치가 미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 대우’(전자)와 ‘한국이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 대우’(후자)를 비교할 때, 계쟁조치가 ‘후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미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⁷³⁾

not apply to: (a) any 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 that is maintained by a Party at: (i)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as set out by that Party in its Schedule to Annex I; (ii) 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as set out by that Party in its Schedule to Annex I; or (iii) a local level of government; (b) the continuation or prompt renewal of any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r (c) an amendment to any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oes not decrease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 with Article 12.2, 12.3, 12.4, or 12.5.” (“제12.2조부터 제12.5조까지는 다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어느 한 당사국이 (i) 제I부속서의 자국 유보 목록에 그 당사국이 명시한 대로, 중앙정부, (ii) 제I부속서의 자국 유보 목록에 그 당사국이 명시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iii) 지방정부에서 유지하는 여하한 현행 불합치조치; (b) (a)호에서 언급된 여하한 불합치조치의 지속 또는 즉각적인 갱신, 또는 (c) (a)호에서 언급된 여하한 불합치조치의 개정(다만 그 개정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또는 제12.5조와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 한함)”].

73) Panel Report, *Argentina - Financial Services*, para. 7.448.

GATS 제XVII조 1항의 구성요건에 관한 이러한 WTO 법리는 한-미 FTA 제12.2조 1항의 구성요건을 분석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참조될 수 있다고 본다. 즉 한국의 서비스 무역 조치에 대하여 미국이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소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계쟁 조치가 한-미 FTA 제12.2조 1항에 불합치한다는 판정을 얻기 위하여, 미국은 (1) 계쟁조치와 관련 서비스 분야가 한국의 제I부속서와 제II부속서에서 'NT 의무 유보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2) 계쟁조치가 해당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공급 방식에서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⁷⁴⁾ (3) '계쟁조치가 미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 대우'(전자)와 '한국이 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종 상황에서 부여한 대우'(후자)를 비교할 때, 계쟁조치가 '후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미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GATS NT 조항과 한-미 FTA 제12장 NT 조항의 핵심은 '동종성'(likeness) 요건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no less favorable treatment) 요건이므로 이하에서 각각 살펴본다.

다. 동종성 요건

상품 무역의 동종성 결정 기준으로 'BTA 동종성 분석 방법론'(BTA approach for analyzing likeness)[이하 'BTA 방법론'으로 칭함]⁷⁵⁾이 제시하는 네 가지 기준(1) 해당 상

74) 한-미 FTA 제12.1조(Scope and Coverage) 1항[“This Chapter applies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affecting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by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Such measures include measures affecting: (a) the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sale, and delivery of a service; (b) the purchase or use of, or payment for, a service; (c) the access to and use of distribution, transport, or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in connection with the supply of a service; (d) the presence in its territory of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and (e) the provision of a bond or other form of financial security as a condi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밑줄 강조 추가)] 참조. 또한 한-미 FTA 제12.13조의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정의[“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r cross-border supply of services means the supply of a service: (a) from the territory of one Party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b) in the territory of one Party by a person of that Party to a person of the other Party; or (c) by a national of a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but does not include the supply of a service in the territory of a Party by a covered investment”] 참조.

품의 물리적 고유성, (2) 해당 상품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최종용도에 부합할 수 있는 정도, (3) 소비자가 특정 필요 또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상품을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대체수단으로 인식하고 대하는 정도, (4) 관세 목적상 해당 상품의 국제적인 분류]은 공통적으로 '상품 간 경쟁 관련성'과 관계되므로,⁷⁵⁾ GATT 제III조 4항상의 동종성 결정은 근본적으로 '상품 간 경쟁 관계'(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and among products)의 성질과 한도에 관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⁷⁷⁾

이러한 BTA 방법론의 네 가지 기준이 (1)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경쟁 관계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한도에서, 그리고 (2) 서비스 무역의 고유한 특성이 고려되도록 적절히 조정된다면, '서비스 동종성' 분석과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분석에서 준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⁷⁸⁾ 즉 BTA 방법론의 네 가지 기준은 서비스 무역의 동종성 결정에서, (1) 서비스의 최종용도, (2)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3)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특성, (4) UN 중앙생산물분류(CPC)와 같은 서비스 분류와 명세 등으로 적절히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⁷⁹⁾

상품 무역의 동종성 결정 기준이 BTA 방법론상의 네 가지 기준으로 반드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그리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기준 또는 고려요소가 동종성 결정 기준으로 추가될 수 있는데,⁸⁰⁾ 이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무역의 동종성 결정 기준에서도 '사안에 따라', 새로운 기준 또는 고려요소가 동종성 결정 기준으로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⁸¹⁾

동종성의 범위는 '적용되는 WTO 규정'(예: GATT 1994 제I조 1항, 제III조 2항 1문, 제III조 2항 2문, 제III조 4항, GATS 제II조 1항, 제XVII조 1항)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다.⁸²⁾ 조약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⁸³⁾ GATS 제XVII조 1항상의 '동종의'(like)라는 용어는

75) BTA 방법론에 대해서는 박영덕(2017), 124-125쪽 참조.

76) AB Report, *EC - Asbestos*, para. 102 참조.

77) *Ibid.*, para. 99 참조.

78) AB Report, *Argentina - Financial Services*, para. 6.31 참조.

79) *Ibid.*, para. 6.32.

80) AB Report, *EC - Asbestos*, para. 113 참조.

81) AB Report, *Argentina - Financial Services*, para. 6.30 참조.

82) AB Report, *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DSR 1996:I, p. 97 at 114.

그 용어의 문맥(context) 내에서 그리고 WTO협정과 그 부속협정의 대상(object)과 목적(purpose)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⁸⁴⁾ China - Electronic Payment Services 사건에서 패널은 동종 서비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로 비교되는 서비스들이 '정확히'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서비스가 외양이나 크기와 같은 '어떠한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동일하다면 동종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⁸⁵⁾

서비스의 '공급 수단'(means of supply)의 차이는 서비스 무역의 동종성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⁸⁶⁾ 서비스 '공급 방식'(mode of supply)의 차이는 동종성 결정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⁸⁷⁾ 한편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문구와 관련하여, '서비스 동종성'과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이 별개로 분석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법리는 현재까지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⁸⁸⁾

한-미 FTA 제12.2조 1항은 동종성 요건으로 동종상황성(in like circumstances)을 제시하지만 한-미 FTA 차원에서 '동종 상황'은 정의되지 않았다. 동종상황성(under like circumstances)은 GATS 통신부속서⁸⁹⁾에서 잠시 언급되지만 Mexico - Telecoms 사건 패널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풀이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NAFTA 중재판정부가 쿼리어서비스와

8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

84) AB Report, *Argentina - Financial Services*, para. 6.20 참조.

85) Panel Report, *China - Electronic Payment Services*, para. 7.687 참조.

86) Panel Report, *US - Gambling*, para. 6.285 참조.

87) *Canada - Autos* 사건에서 패널은 서비스 공급 방식의 차이를 동종성 결정에서 고려하지 않았지만, *Argentina - Financial Services*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서비스 공급 방식의 차이가 동종성 결정에서 추가적으로 감안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각각 Panel Report, *Canada - Autos*, paras. 10.307-10.308; AB Report, *Argentina - Financial Services*, para. 6.33 참조. 또한 이한영·차성민(2018), 151-155쪽 참조.

88) Panel Report, *China - Electronic Payment Services*, para. 7.707; AB Report, *Argentina - Financial Services*, para. 6.29 참조.

89) GATS 통신부속서 제5조 (a)항의 각주 15[“The term “non-discriminatory” is understood to refer to most-favoured-nation and national treatment as defined in the Agreement, as well as to reflect sector-specific usage of the term to mean “terms and conditions no less favourable than those accorded to any other user of like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or services under like circumstances” .]

우편서비스 간의 내재적 차이를 인정하여 쿠리어사업자(UPS)와 우편사업자(Canada Post)가 동종 상황에 있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⁹⁰⁾는 한-미 FTA 제12.2조 1항상의 ‘동종상황성’ 요건의 해석에서 참조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한-미 FTA 제12.2조와 달리, USMCA 제15.3조 3항⁹¹⁾은 상황의 전체성(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강조하고, ‘정당한 공공 복지 목적’(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을 동종상황성 심사의 고려요소로서 예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이 한-미 FTA 제12.2조 1항의 동종상황성 해석에서 ‘사안에 따라’ 참조될 수도 있다고 본다.⁹²⁾

라. ‘불리하지 않은 대우’ 요건

GATS 제XVII조 2항은 “회원국은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formally identical treatment)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formally different treatment)를 여타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XVII조 3항은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가 여타 회원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그 회원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대우는 불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한국의 대우가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1) 미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한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이 변경되거나, (2) 한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

90) NAFTA Arbitral Tribunal (Ch 11), *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 v Government of Canada*, Award, 24 May 2007, UNCITRAL, paras. 87-119 참조.

91) USMCA 제15.3조 3항[“For greater certainty, whether treat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accorded in “like circumstances” depends on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including whether the relevant treatment distinguishes between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n the basis of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 또한 CPTPP 제10.3조의 각주 2 참조.

92) 이와 유사하게, ‘목적 및 효과 방법론’(aim-and-effect approach)은 상품의 물리적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는 BTA 방법론과 달리, 해당 조치의 ‘규제적 목적’(regulatory purpose)을 동종성 결정의 주된 기준으로 취한다. 박영덕(2017), 125쪽.

하여, 미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해하도록 경쟁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가 인정될 수 있다.⁹³⁾

이처럼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가 ‘자국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또는 외국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해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사실상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사실상 불리한 대우]이라 부르고,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가 이렇게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법문상 차별’(de jure discrimination)[법문상 불리한 대우]이라고 부르는데, GATT 1994와 GATS상의 불리한 대우는 법문상 차별과 사실상 차별을 모두 포괄한다.⁹⁴⁾ 한-미 FTA 제12.2조상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no less favorable treatment)는 GATS 제XVII조상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 관한 법리를 참조하여 심사될 것이므로, 한-미 FTA 제12.2조 1항의 불리한 대우 역시 법문상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 차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것으로 본다.

2. FTA 현지주재의무의 이해

가. 개관

한-미 FTA 제12.5조는 LP 의무를 “어떠한 당사국도 어느 하나의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여하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한다.⁹⁵⁾ 한-미 FTA 제12.5조는 NAFTA 제1205조에 그 기원을 두는데,⁹⁶⁾ NAFTA 제

93) GATT Panel Report, *US - Section 337*, para. 5.11; AB Report, *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para. 137; 박영덕(2017), 77-78쪽 참조.

94) AB Report, *EC - Bananas III*, para. 234; AB Report, *Canada - Autos*, para. 78 참조.

95) 한-미 FTA 제12.5조[“Neither Party may require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to establish or maintain a representative office or any form of enterprise, or to be resident, in it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the cross-border supply of a service.”].

96) 한-미 FTA 제12.5조는 NAFTA 제1205조(Local Presence)[“No Party may require a service provider of another Party to establish or maintain a representative office or any form of enterprise, or to be resident, in it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the cross-border provision of a service.”]에 그 기원을 둔다. 참고로 NAFTA 제1205조는 미국-캐나다 FTA 서비스 챕터 제1402조(Rights and Obligations)의 8항[“Notwithstanding that such measures may

1205조는 ‘현지 주재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right to provide a service without a local presence),⁹⁷⁾ 현지 주재요건 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 local presence requirements)⁹⁸⁾ 등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참고로 한-미 FTA 제12.2조 NT 조항과 제12.5조 LP 조항은 별개의 규범이지만,⁹⁹⁾ 하나의 조치가 LP 조항에 위반되면 NT 조항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미 FTA에서 ‘인’(person)은 “자연인 또는 기업”(a natural person or an enterprise)으로 정의되고,¹⁰⁰⁾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service supplier of a Party)는 “어느 하나의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그 당사자의 인”(a person of that Party that seeks to supply or supplies a service)으로 정의되므로,¹⁰¹⁾ 한-미 FTA 제12.5조의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는 “어느 하나의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기업”으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어느 하나의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의 조건으로서, ‘미국 서비스 공급자’(그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미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에게 한국 내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여하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be consistent with paragraphs 1, 2 and 3 of this Article and Article 1403, neither Party shall introduce any measure, including a measure requiring the establishment or commercial presence by a person of the other Party in it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the provision of a covered service, that constitutes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persons of the Parties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bilateral trade in covered services.” (밑줄 강조 추가)]과 관련이 있다.

97) WTO(1996), p. 3 참조.

98) WT/REG4/1/Add.2, p. 6 참조.

99) 한-미 FTA 제I부속서(주해) 제7항[“For greater certainty, Local Presence (Article 12.5) an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2.2) are separate disciplines and a measure that is only inconsistent with Local Presence (Article 12.5) need not be reserved against National Treatment (Article 12.2).”] 참조.

100) 한-미 FTA 제1.4조(정의). 참고로 GATS 제XXVIII(i)조는 ‘인’(person)을 “자연인 또는 법인”(“either a natural person or a juridical person”)으로 정의한다.

101) 한-미 FTA 제12.13조(정의). 참고로 GATS 제XXVIII(g)조는 ‘서비스 공급자’(service supplier)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여하한 인”(any person that supplies a service)으로 정의한다.

한-미 FTA는 특정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유보 목록을 ‘네거티브 목록 방식’으로 기재 하였으므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현행 조치 또는 미래 조치에 대한 LP 의무 유보 사항’을 한국의 제I부속서(현행 조치 유보), 제II부속서(미래 조치 유보), 제III부속서(금융 서비스 분야 유보) 등에 명시한 경우라면, 유보 목록에 명시된 이러한 불합치조치(NCM)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하여 LP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¹⁰²⁾

요컨대 ‘한국의 제I부속서 내지 제III부속서에 유보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LP 조치’가 한-미 FTA 제12.5조에 위반될 수 있는 경우는 (1) 한국이 어떤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의 조건으로서, 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한국 내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여하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2) 한국이 어떤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의 조건으로서, 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한국 영역에서 거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 유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한국이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의 조건으로서, 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한국 내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여하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한-미 FTA는 ‘기업’(enterprise)을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민간에 의해서 소유되거나 지배되든 아니면 정부에 의해서 소유되거나 지배되든,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여하한 실체(여하한 회사, 신탁회사, 조합, 개인기업, 합작투자회사,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체를 포함함)”로 정의하는데,¹⁰³⁾ 제12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 챕터)은 ‘기업’의 이러한 정의에 ‘기업의 지점’을 포함시킨다.¹⁰⁴⁾ 따라서 한-미 FTA 제12.5조상의 ‘a

102) 한-미 FTA 제12.6조 1항 및 2항.

103) 한-미 FTA 제1.4조(정의)[“enterprise means any entity constituted or organized under applicable law, whether or not for profit, and whether privately or governmentally owned or controlled, including any corporation, trust, partnership, sole proprietorship, joint venture, association, or similar organization”].

104) 한-미 FTA 제12.13조(정의)[“enterprise means an “enterprise” as defined in Article 1.4 (Definitions), and a branch of an enterprise” ; “enterprise of a Party means an enterprise organized or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a Party, and a branch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nd carrying out business activities there”] 참조.

representative office or any form of enterprise' 문구는 (1) 대표사무소, 또는 (2) 회사, 신탁회사, 조합, 개인기업, 합작투자회사,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체, 또는 (3) '회사, 신탁회사, 조합, 개인기업, 합작투자회사,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체'의 지점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풀이는 GATS의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의 의미와도 맥을 같이한다.

GATS는 '법인'(juridical person)을 “영리 목적이든 아니면 그 밖의 목적이든, 그리고 민간 소유이든 아니면 정부 소유이든,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된 여하한 법적 실체(여하한 회사, 신탁회사, 조합, 합작투자회사, 개인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함)”으로 정의한다.¹⁰⁵⁾ 그리고 GATS상 '상업적 주재'는 “어느 하나의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하는, 어느 한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의 여하한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 직업적인 설립체(any type of business or professional establishment)”를 지칭하는데, “어느 하나의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하는, 어느 한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인수 또는 유지를 통한, 여하한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 직업적인 설립체”와 “어느 하나의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하는, 어느 한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의 지점(branch) 또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창설 또는 유지를 통한, 여하한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 직업적인 설립체”로 이분될 수 있다.¹⁰⁶⁾ 그런데 한-미 FTA 제12.5조상의 '기업'의 정의에는 GATS 제XXVIII(1)조상의 '법인'의 정의(“any legal entity duly constituted or otherwise organized”)와 달리, '정식으로'(duly) 용어와 '법적'(legal) 용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 FTA 제12.5조상의 'a representative office or any form of enterprise' 문구의 외연이 상업적 주재의 외연보다 더 넓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105) GATS 제XXVIII(1)조[“juridical person means any legal entity duly constituted or otherwise organized under applicable law, whether for profit or otherwise, and whether privately-owned or governmentally-owned, including any corporation, trust, partnership, joint venture, sole proprietorship or association”]

106) GATS 제XXVIII(d)조[“commercial presence means any type of business or professional establishment, including through (i) the constitution, acquisition or maintenance of a juridical person, or (ii) the creation or maintenance of a branch or a representative office,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a service”] 참조.

요컨대 한국은 ‘LP 의무가 유보되지 않은 특정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의 조건으로서, ‘미국 서비스 공급자’(그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미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에게 한국 내에서, (1) 대표사무소, 또는 (2) 회사, 신탁회사, 조합, 개인기업, 합작투자회사,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체, 또는 (3) ‘회사, 신탁회사, 조합, 개인기업, 합작투자회사,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체’의 지점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다. 한국이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의 조건으로서, 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한국 내에서 거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한-미 FTA 제12.5조의 ‘서비스 공급자’는 ‘자연인 또는 기업’으로 풀이되는데, 이 조는 ‘to be resident’의 주체를 자연인에 한정하지 않고 단순히 ‘서비스 공급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to be resident’의 주체에 ‘기업’이 포함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¹⁰⁷⁾ 우선 ‘서비스 공급자’가 ‘자연인’이라면, “한국은 ‘LP 의무가 유보되지 않은 특정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의 조건으로서, ‘그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미국의 자연인’에게 한국 내에서 거주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가 되는데, 이러한 풀이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런데 ‘서비스 공급자’가 ‘기업’이라면, “미국 기업에게 한국 내에서 거주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풀이가 되므로, ‘to be resident’ 용어와 관련하여 미국 기업의 한국 내 ‘거주’가 과연 허용될 수 있는 해석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⁰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ATS와 한-미 FTA가 ‘상업적 주체’와 ‘기업’을 ‘설립하다’(establish), ‘유지하다’(maintain), ‘창설하다’(create), ‘조직하다’(organize) 등의 용어를 활용하여 정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resident’는 자연인의 ‘거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¹⁰⁹⁾ 물론 ‘resident’, ‘reside’, ‘residence’ 용어가 자연인 또는 국민

107) 같은 견해로는 이한영·차성민(2018), 236-237쪽 참조.

108) 전술한 바와 같이, 한-미 FTA 제12.5조의 ‘to be resident’ 용어는 NAFTA 제1205조의 ‘to be resident’ 용어에 그 기원을 두는데, NAFTA 제1205조의 ‘to be resident’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to reside’로 보는 견해와 ‘to be a resident’로 보는 견해가 공존하였다. 각각 Meléndez(2010), p. 112; Broadman(1993), pp. 637-638 참조.

109) 한-미 FTA 제12.5조의 국문본[“어떠한 당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은

(national)과 함께 사용될 때는 “자연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두다”의 의미로 풀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¹¹⁰⁾

그런데 사전적 의미로 볼 때, ‘to be resident’ 용어는 ‘거주하다’ 외에도 ‘주재하다’, ‘소재하다’ 등의 풀이도 가능해 보인다.¹¹¹⁾ 따라서 ‘resident’, ‘reside’, ‘residence’ 용어가 ‘기업’과 함께 사용될 때는 ‘기업의 영업소 등이 소재한다’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 2항의 “any person not resident in its own territory” 문구¹¹²⁾에서 ‘person’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¹¹³⁾ 관세평가협정에서 ‘not resident’ 용어는 “자연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않다” 또는 “기업의 영업소 등이 소재하지 않다”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미 FTA 제12.5조의 ‘서비스 공급자’가 ‘자연인 또는 기업’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to be resident’의 주체가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서비스 공급자’로 명시된 것은 ‘to be resident’의 주체에 ‘기업’이 포함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한-미 FTA 성안자(drafter)의 의도(intention)일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생각된다.¹¹⁴⁾

‘to be resident’ 용어를 ‘to be a resident’로 풀이한다.

110) GATS 제XXVIII(k)조의 ‘다른 회원국의 자연인’에 대한 정의 참조.

111) ‘resident’의 사전적 의미에는 “That resides, dwells, or has an abode in a place; living somewhere on a long-term basis.”, “Staying regularly in or at a place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or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s”, “Of a thing: situated, lying.” 등이 포함된다. 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oed.com) (검색 2021.11.7).

112)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 2항 1문[“No Member may require or compel any person not resident in its own territory to produce for examination, or to allow access to, any account or other record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a computed value.” (회원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인에게 산정가격을 결정하는 목적으로, 여하한 회계장부 또는 다른 기록을 검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113) WTO 관세평가협정 제15조 4항 (d)호 내지 (g)호 참조.

11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따른 조약 해석의 목적은 당사자들의 공통된 의도(common intentions)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AB Report, *EC - Computer Equipment*, para. 84 참조.

이러한 이유로 한-미 FTA 제12.5조의 “Neither Party may require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to be resident, in it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the cross-border supply of a service.” 문구는 한국은 ‘LP 의무가 유보되지 않은 특정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의 조건으로서, ‘미국 서비스 공급자’(그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미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에게 한국 내에서 거주·소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한민국 법규의 목록, 약칭 및 인용 정보¹¹⁵⁾ >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 시행 2011.9.30; 최근 개정 2020.2.4, 법률 제16930호, 시행 2020.8.5) [제39조의11 신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02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정 2011.9.29, 대통령령 제23169호, 시행 2011.9.30; 개정 2020.8.4, 대통령령 제30892호, 시행 2020.8.5) [제48조의9 신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정 2011.9.29, 대통령령 제23169호, 시행 2011.9.30; 최근 개정 2021.2.2, 대통령령 제31429호, 시행 2021.2.5)
- **전기통신사업법(199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시행 1992.7.1)
- **전기통신사업법(1995)**: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995.1.5, 법률 제4903호, 시행 1995.4.6)
- **전기통신사업법(1996)**: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996.12.30, 법률 제5220호, 시행 1997.1.31)
- **전기통신사업법(2020)**: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20.6.9, 법률 제17352호, 시행 2020.12.10) [제22조의8 신설]
- **전기통신사업법**: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시행 1984.9.1; 최근 개정 2021.9.14, 법률 제18451호, 시행 2021.9.14)

115) 목록 1(법규 명칭 가나다순)은 다음 자료에서 열거된 대한민국 법규의 인용 및 기술 방식을 따랐다. 박영덕(2017), 453-553쪽.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정 1984.9.1, 대통령령 제 11495호, 시행 1984.9.1; 개정 2020.12.8, 대통령령 제31223호, 시행 2020.12.10) [제30조의8 1항 신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정 1984.9.1, 대통령령 제11495호, 시행 1984.9.1; 최근 개정 2021.6.8, 대통령령 제31726호, 시행 2021.6.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199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992.3.2, 체신부령 제842호, 시행 1992.3.2)
- **정보통신망법(20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86.5.12, 법률 제3848호, 시행 1987.1.1; 개정 2018.9.18, 법률 제15751호, 시행 2019.3.19) [제32조의5를 신설]
- **정보통신망법(20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86.5.12, 법률 제3848호, 시행 1987.1.1; 개정 2020.2.4, 법률 제16955호, 시행 2020.8.5) [제32조의5 개정]
- **정보통신망법**: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86.5.12, 법률 제3848호, 시행 1987.1.1; 최근 개정 2020.6.9, 법률 제17358호, 시행 2020.12.10)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20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86.12.31, 대통령령 제12049호, 시행 1987.1.1; 개정 2019.3.19, 대통령령 제 29633호, 시행 2019.3.19) [제19조 신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20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86.12.31, 대통령령 제12049호, 시행 1987.1.1; 개정 2020.8.4, 대통령령 제30894호,
시행 2020.8.5) [제19조 개정]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86.12.31, 대통령령 제12049호, 시행 1987.1.1; 최근 개정 2021.2.2, 대통령령 제31429호,
시행 2021.2.5.)

<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조약과 국제기구 문서의 목록, 약칭 및 인용 정보¹¹⁶⁾>

-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서명 2018.3.8, 발효 2018.12.30)
- **GATT 1994**: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 Language Incorporating GATT 1947 and Other Instruments into GATT 1994,
1867 UNTS 190; GATT 1947과 그 밖의 문서를 GATT 1994로 통합시키는 규정
-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1869 UNTS 183;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DPR**: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J L 119/1, 2016.5.4) (채
택 2016.4.27, 발효 2016.5.24, 시행 2018.5.25);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
-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TIAS, 32 ILM 296 & 32 ILM 612 (서명 1992.12.17, 발효
1994.1.1.); 북미자유무역협정

116) 목록 2(조약명과 문서명의 알파벳/가나다순)는 다음 자료에서 열거된 조약의 인용 및
기술 방식을 따랐다. 박영덕(2017), vii쪽 & xv쪽.

- **USMCA**: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Canada;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서명 2018.11.30)

- **WTO협정**: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1867 UNTS 154 (체결 1994.4.15, 발효 1995.1.1);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쉬 협정, 다자조약집 제12권 (한국의 수락 1994.12.30, 관보 제12905호(1994.12.31), 조약 제1265호, 발효 1995.1.1)

- **WTO 관세평가협정**: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Customs Valuation Agreement), 1868 UNTS 279; GATT 1994 제VI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미국-캐나다 FT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316 UNTS 3 (서명 1988.1.2, 발효 1989.1.1, NAFTA에 의한 부분 대체 1994.1.1)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155 UNTS 331 (서명을 위한 개방 1969.5.23, 발효 1980.1.27); 다자조약집 제5권 (한국의 서명 1969.11.27, 관보 제8450호(1980.1.22), 조약 제697호, 발효 1980.1.27)

- **한-EU FT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명 2007.6.30, 관보 제17717호(ㄱ2)(2012.3.12), 조약 제2081호, 발효 2012.3.15)

- **한-미 FT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명 2007.6.30, 관보 제17717호(ㄱ2)(2012.3.12), 조약 제2081호, 발효 2012.3.15)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한-미 FTA 개정의정서] (서명 2018.9.24, 관보 제19410호 (정호)(2018.12.31), 조약 제2403호, 발효 2019.1.1)

[부록 02] 국내대리인 관련 유사 입법 사례

○ 방송법 (78조의 2)

방송법 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4.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7. 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재송신하는 방송의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방송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61조의3(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③ 외국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송신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연혁, 주요 사업내용 및 설립근거자료
2. 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
3. 교류협력 등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대한 기여계획서
4. 재송신 송출경로 등 기술적 사항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6. 재송신에 따른 이용요금에 관한 서류(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디자인보호법(제6조, 제7조, 제15조)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디자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디자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디자인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제4조의3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디자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디자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디자인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본조신설 2009.6.9.]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의 선임

※ 신설 당시의 법률 내용은 현재와 동일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 신설 당시의 법률 내용은 현재와 동일

○ 특허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5조(제외자의 특허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제외자”라 한다)는 제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특허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제55조 국내에 거주치 않고 특허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이익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는 본법 급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수속,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일체 행위를 대리할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단, 본조의 대리인을 선임치 않는 시는 좌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간주함.

1. 취득된 이익과 권리의 전 소유자
2. 제1호에 전 소유자가 제53조, 제54조 또는 본조에 의하여 선임한 대리인
3. 제1호의 소유자가 선임하여 기 선임이 등록된 또는 등록될 대리인
4. 출원,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공유인 시는 각 공유자[1952.4.13. 일부개정]

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 1952년 당시 ‘대리권의 범위’ 조항 없음

제7조(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6.11.]

※ 1952년 당시 ‘대리권의 증명’ 조항 없음

○ 상표법(제6조, 제7조, 제15조)

제6조(제외자의 상표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제외자”라 한다)는 제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외자의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상표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상표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제5조의3(제외자의 상표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제외자”라 한다)는 제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외자의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상표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상표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본조신설 2011.12.2.]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하 “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가. 제84조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라 한다)
나.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라 한다)
- 다. 제211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 위한 제20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라 한다)
4. 상표권의 포기
5. 신청의 취하
6. 청구의 취하
7.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제5조의4(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9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2.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취하
4. 상표권의 포기
5. 신청의 취하
6. 청구의 취하
7.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본조신설 2011.12.2.]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상표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제5조의12(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상표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소재지로 본다.[본조신설 2011.12.2.]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제21조)

제21조(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자산운용회사(이하 “외국자산운용회사”라 한다)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4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지점등의 영업기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 ②외국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당해 지점등의 영업기금
 4. 당해 지점등의 명칭 및 소재지
 5. 당해 지점등의 대표자의 성명 및 국내주소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1. 회사의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
 3. 주요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4. 당해 지점등의 설치를 의결한 이사회 의사록

5. 당해 지점등의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당해 지점등의 업무개시 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 ④ **국내에 지점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외국자산운용회사는 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상 필요한 연락을 위하여 국내에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 제정 당시의 국내 대리인 관련 규정(제4항) 내용은 현재와 동일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27조(대리인의 지정) 적합성평가 신청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제조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적합성평가 신청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적합인증의 신청
2. 제8조에 따른 적합등록 신청
3.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
4. 제16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
5.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6. 제25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제27조(대리인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적합성평가 신청에 있어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제조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적합인증의 신청
2. 제8조에 따른 적합등록 신청
3.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
4. 제16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
5.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6. 제25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2011.1.21. 제정]

[부록 03]

〈정보통신망법 상 임시조치 규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저 자 소 개 ●

김 민 희

-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 성균관대 경제학과 석사
- 美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현 수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법학과 석사
- 고려대 법학과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보 겸

- 고려대 경제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박 영 덕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법학과 석사
- 연세대 법학과 박사
- 美 Gero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 현 해리국제통상센터 센터장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KCC-2021-15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21년 12월 일 인쇄

2021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
